

월간

# 재정포럼

2024. February  
Vol.332

02



---

## 권두칼럼

재정 운영의 칸막이 구조  
철폐 노력  
| 이원희

---

## 현안분석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 권성준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  
| 송현진

---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 지침(안) 발표 외

---

Kipf

# 재정포럼

2024.02. Vol.332

월간 재정포럼 2024년 2월호 통권 제332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http://www.kipf.re.kr)

## CONTENTS

### 권두칼럼

02 재정 운영의 칸막이 구조 철폐 노력 | 이원희

### 현안분석

08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 권성준

24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 | 송현진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2 미국 -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 지침(안)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재정 운영의 칸막이 구조 철폐 노력



+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 들어가며

최근 행정 운영의 칸막이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부처별로 자기 업무만 하다 보면 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이 조정되지 못하고 할거주의 운영이 발생한다. 이런 할거주의는 재정 운영에서도 칸막이 구조로 인해 경직성을 초래하고 낭비 발생의 요인이 된다. 다양한 회계 장부로 인해 사업이 분절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으로 분절된 구조가 칸막이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사업이 숙성되지 못한 채 운영되기도 하고, 밀어내기식 낭비성 집행도 발견된다.

이러한 칸막이 구조를 재정 운영에서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효과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

## 90가지의 재정 장부로 인한 칸막이 구조

정부가 관리하는 장부는 일반회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 특별회계 5가지, 기타 특별회계 16가지, 기금 68가지 등 총 90가지의 주체가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총지출 규모 638조원 중 일반회계는 369조원, 특별회계는 71.6조원, 기금은 197조원의 비중이다. 2023년 본예산 638조원은 2022년 679조원 대비 6% 감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6조원에서 446조원으로 10% 감소했으나, 특별회계는 78조원에서 87조원으로 11% 증가했고, 기금은 756조원에서 893조원으로 18% 증가했다. 흔히들 말하는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로 적립금을 마련하고 지출하는 구조이다. 보험성 기금과 달리 계정성·금융성·사업성 기금은 개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적립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85조원 수준이다. 여유자금이 불필요한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쟁점이 되는 절박한 시기에 구원 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개혁은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충격이 덜 하지만, 이때는 개혁이 절실하지 않다. 어려운 시기에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의 칸막이 구조인 특별회계와 기금을 개혁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 확보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전문성과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각종 이해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을 확보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여유자금이 불필요한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쟁점이 되는 절박한 시기에 구원 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 국가와 지방의 칸막이 구조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관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에 의한 칸막이 구조가 있다. 2022년도 총사용액 기준으로 중앙정부 394조원, 지방정부 일반재정 281조원, 교육청이 별도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 8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가가 징수하지만 지방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자금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58조원 규모이고,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75조 7천억원이다. 즉 내국세 중 40%는 중앙정부가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하는 칸막이 구조이다.

2023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초·중등 교육 재정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제도 개편이 있었지만 3년 한시제이고, 1조 5천억원의 고등교육지원 규모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중앙재정과 초·중등 교육재정을 교부세라는 칸막이 장치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예산 1년주의 원칙의 칸막이 구조

예산을 1년 단위로 운영하다 보면 경직성으로 인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

예산의 신속 집행은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개선과  
맞물려야 한다.

<표 1> 최근 총지출 기준 집행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예산 현액	지출액	미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년	4,844,063	4,739,328	29,395	75,381
2020년	5,623,872	5,495,454	25,037	103,380
2021년	6,172,070	5,984,677	42,498	144,894
2022년	6,904,235	6,705,503	48,968	147,763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2년도 결산안 검토보고서」 2023.


고 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매년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을 보면 집행률이 97% 수준으로 3% 정도가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2년은 미집행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규모로 보면 19조 6천억원을 미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의 시간과 노력도 불필요한 비용이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출했으나 교부받은 기관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출자, 출연을 통한 실집행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들 피교부기관의 집행은 더욱 늦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22년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집행률은 49.9%이다. 중앙정부가 내부 행정을 처리하느라 6월 경에 교부하고는 12월까지 집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된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예산의 신속 집행은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개선과 맞물려야 한다.

## 재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행정 개혁과 관련하여 민첩성(agility)을 확보하여 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말 잔치(talk show)”라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재정 운영에 시차(time lag)가 발생하여 ‘자는 사람을 깨워서 수면제 먹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측 가능성을 위해 2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주장되기도 한다. 신축성을 위해 부처별 또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게 정책예비비를 할당하여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절차를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국회가 정부를 신뢰하고 이러한 자율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 회복(Rebuilding Trust)인 것이 상징적이다. 22대 국회에서 재정 제도의 신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대 담론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22대 국회에서  
재정 제도의 신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대 담론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현안분석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

송현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01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jkwon84@kipf.re.kr)

### 1.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2023년에도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명을 기록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이러한 저출산 상황은 생산인구 또는 근로인구 감소로 이어져 충분한 세수입 확보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로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우리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출산 및 자녀 양육가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영아·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과 관련된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등의 제도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저출산에 대응할 수도 있다. 즉 출산 및 보육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을 비과세하는 제도,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등 출산 및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등이 있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산후조리

1) 통계청, 「2023년 9월 인구동향」, p. 3

원·기저귀 분유 등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등도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이다.

본고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소득세부담의 규모를 연령과 자녀유무별로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소득세 지원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나 감면제도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어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지원 재정정책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소득세 지원제도의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한다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소득세 지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책대상의 세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혼인율 등 저출산 관련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저출산 대응에 관련될 수 있는 자녀 출산 및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소득세 제도의 지원내용과 정책규모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의 세부담 현황을 살펴본다.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이 대체로 자녀가 없는 20~30대 부부로 구성된 가구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부담 현황 분석은 연령과 자녀유무별로 소득세액, 실효세율, 면세자 비율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한다. 구체적으로 세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소득세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 및 정책방향을 조세 본연의 기능, 재정정책과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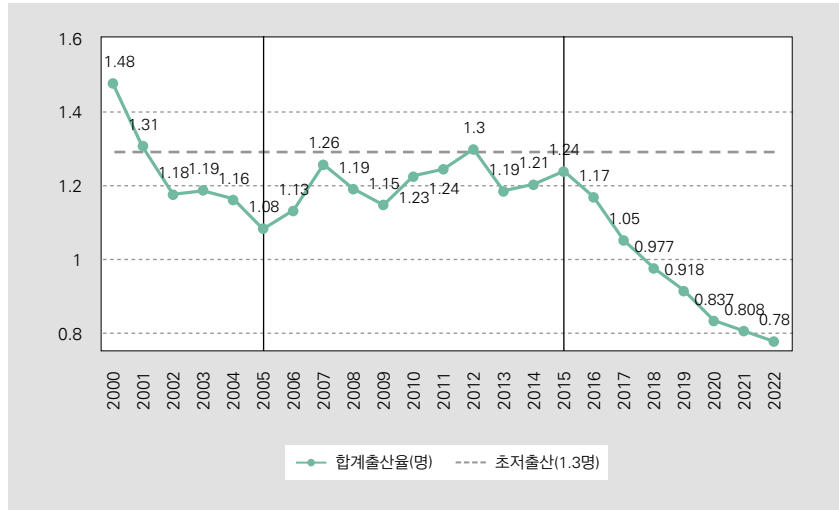
## II. 저출산 현황

한 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사회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면서  
1명대가 깨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에는 0.78명에  
이르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1] 2000~2022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정의됨  
 2. 초저출산 사회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를 말함  
 출처: 권성준 외(2023), [그림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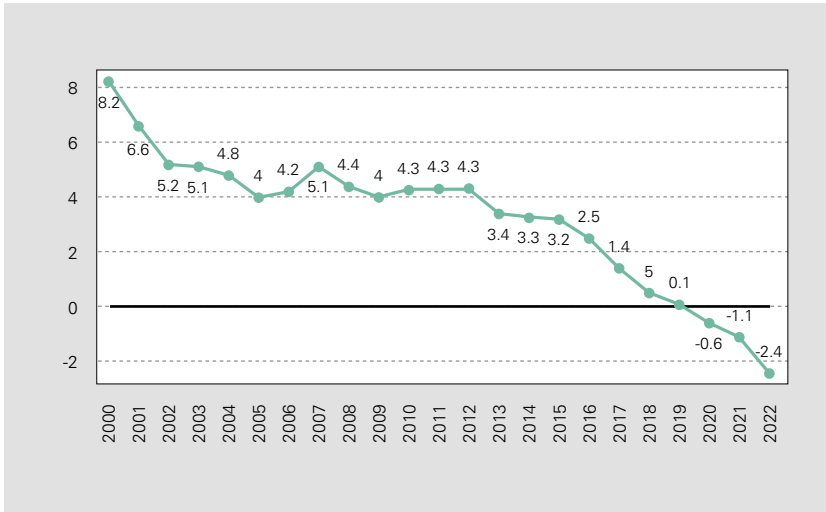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 기준보다 높았지만, 2002년 1.1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 사회의 기준인 1.3명을 넘어서지는 못하였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조금씩 회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래서 2012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에 도달했으며 2013년 다시 1.19명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2015년 1.24명으로 다시 올라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유지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면서 1명대가 깨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에는 0.78명에 이르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에서 조사망률(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을 뺀 값인 인구 자연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보여주는데, 2020년 자연증가율은 -0.6명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에는 -2.4명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낮아진 혼인율도 지목되고 있다.

[그림 2] 2000~2022년 인구 자연증가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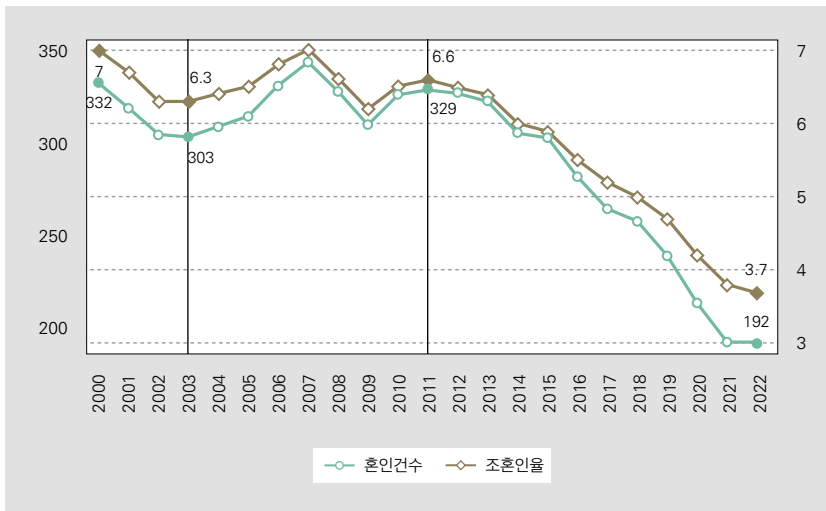
2020년 자연증가율은 -0.6명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에는 -2.4명에 이르렀다.

주: 자연증가율은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에서 조사망률(인구 천명당 사망자 수)을 제한 값으로 연앙인구 천명당 인구 증감(명)을 나타냄

출처: 권성준 외(2023), [그림 II-3]

[그림 3] 2000~2022년 혼인건수 및 조(粗)혼인율

(단위: 천건, 건)



주: 조(粗)혼인율은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출처: 권성준 외(2023), [그림 II-9]

[그림 3]은 2000~2022년 우리나라 혼인건수와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을 보여준다. 2015년 이전 혼인건수는 등락이 존재하지만 30만~35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혼인건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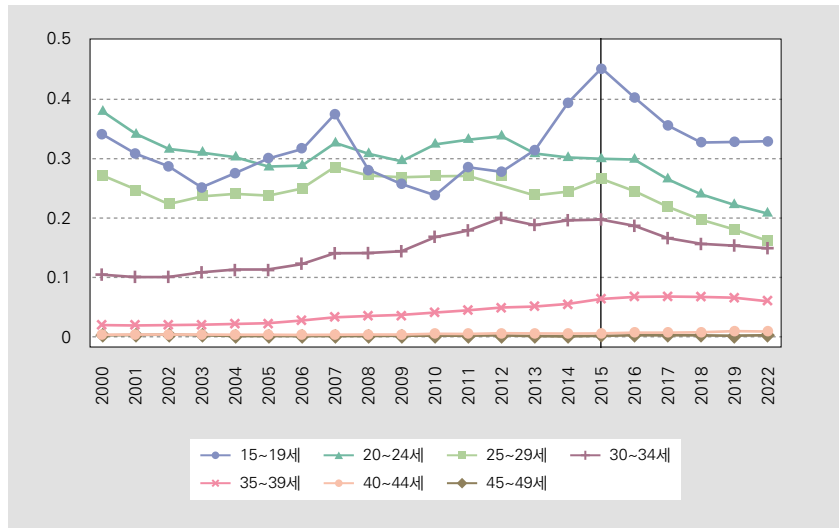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이  
급감한 시기가 2015년부터로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고 2022년에는 19만건 수준에 이르렀다. 조혼인율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2015년 이전 조혼인율은 6~7건 수준이었다가 2015년 이후 급락하여 2022년에는 3.7건을 기록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이 급감한 시기가 2015년부터로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합계출산율의 급락이 혼인율의 급락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유배우 출산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유배우 출산율의 추이를 연령대별로 보여주는데, 2015년 이전 유배우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발견되지 않는다. 20~29세의 경우 유배우 출산율이 2015년까지는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고, 30~39세의 유배우 출산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바뀌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유배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배우 출산율의 추이가 이렇게 전환된 시점은 합계출산율의 급락 시점과 일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

[그림 4] 유배우 출산율

(단위: 명)



주: 1. 유배우 출산율은 연령별 유배우 여성 수 대비 출산아동 수의 비율을 합산한 것으로 유배우 여성 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냄

2. 유배우자의 수는 5년 단위로 자료가 존재하여 자료가 없는 연도의 경우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함

출처: 권성준 외(2023), [그림 II-15]

근의 출산을 하락이 혼인 후 출산하지 않는 현상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Ⅲ. 저출산 대응 관련 소득세 제도<sup>2)</sup>

우리나라 조세제도 중에는 저출산 대응에 직접적인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는 제도는 없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저출산 대응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소득세제 상에는 자녀장려금을 포함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제도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주로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소득세 제도들의 지원 내용과 정책규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세 공제제도는 자녀세액공제이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2024년 귀속분부터 첫째 자녀는 15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sup>3)</sup> 그리고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에 대해서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8세 이상으로 한정된 것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성이 강한 아동수당을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해주는 환급형 조세제도이다. 그래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보다 자녀장려금이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비 공제제도는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비 공제제도는 일정부분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므로 미취학,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지

우리나라 조세제도 중에는 저출산 대응에 직접적인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는 제도는 없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들은 존재한다.

2) 본장의 내용은 권성준 외 (2023) 제III장의 일부 내용에 최근 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3) 최근 세법개정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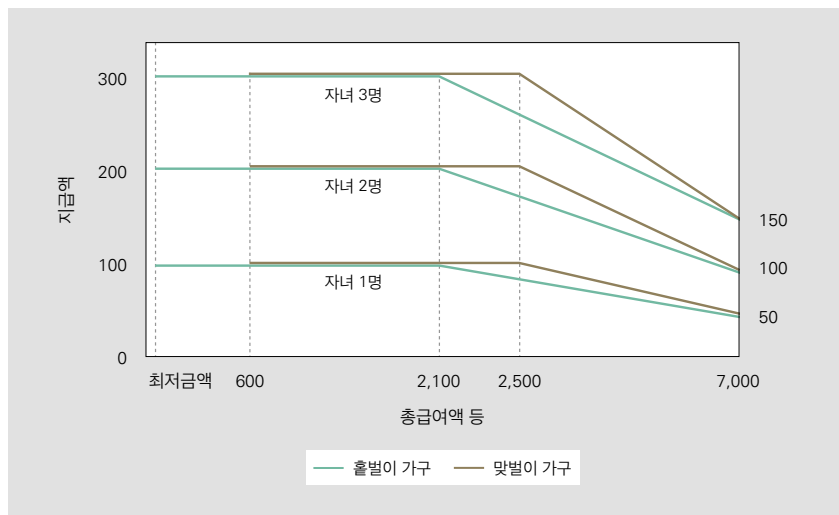
원이 교육비 공제제도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 참고로 교육비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의 공제한도도 존재한다.

의료비 공제제도는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때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므로 이 제도도 일정부분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각각 20%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제한도는 본인, 장애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0~6세 미취학 아동(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에 대해서는 없지만 7세 이상 자녀를 포함하는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sup>4)</sup>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2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다.<sup>5)</sup>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므로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림 5] 자녀장려세제 지급금액

(단위: 만원)



4)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의 한도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폐지된 사항이다.  
5) 최근 제시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의 제한 없이 모든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검색일자: 2023. 12. 6.)상 그림을 최근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함

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은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세제의 지급금액은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다.<sup>6)</sup>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된다. 그리고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지급액은 일정 비율로 감액되다 소득상한 기준에 다다르면 50만원이 된다.

<표 1>은 앞서 살펴본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규모를 보여준다. 2022년 귀속 기준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397만명이고 평균적으로 23.9만원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은 9,512억원이었고 이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sup>7)</sup> 교육비 공제의 경우 341만명이 평균 32만원의 수혜를 받아 1조 931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고, 의료비 공제의 경우 500만명이 평균 31.3만원의 수혜를 받아 1조 5,657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조세지출이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와 3.8%로 전망된다. 그런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에는 소득세 신고자 본인, 배우자,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적용된 공제액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분만 고려한 수혜인원과 금액은 표에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것이다. 자녀장려금은 2022년 52만명에게 지급되었는데, 평균 지급금액은 97.1만원이고 총지급금액은 4,998억원이었다. 자녀장려금이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12월 정부에서 제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여기에는 본장에서 살펴본 소득세 제도들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자녀장려세제의 지급금액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고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된다.

<표 1>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규모

(단위: 만명, 억원, 만원)

구분	수혜인원	조세지출 금액	평균 금액
자녀세액공제	397.1	9,512.2	23.9
교육비 공제	341.4	10,930.5	32.0
의료비 공제	499.6	15,656.5	31.3
자녀장려세제	51.5	4,998.3	97.1

주: 1.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은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단순합계로 중복이 존재함  
 2.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은 2022년 귀속 기준임  
 3. 자녀장려세제는 2021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2022년에 지급된 금액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3, <표 3-1-7>, <표 4-2-6>, <표 14-1-1>

6) 최근 세법개정으로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요건은 4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7) 2023년 소득세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의 규모는 41조 1,855억원으로 전망된다(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3, p. 15).

소득세제를 통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공제나 감면을 통해 소득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제나 감면제도의 도입 및 확대 고려 시 세제지원대상의 소득세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공제대상 손자녀도 공제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0~6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의 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자녀장려세제의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장려세제의 소득상한을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최대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대체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들의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 IV. 연령별·자녀유무별 소득세부담 현황

본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자녀유무별 소득세부담을 살펴본다. 소득세제를 통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공제나 감면을 통해 소득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제나 감면제도의 도입 및 확대 고려 시 세제지원대상의 소득세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제혜택의 수준은 결국 세부담 수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응 관련 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은 대체로 20~30대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혼인율 제고를 통한 출산율 제고까지 고려한다면 미혼인 20~30대도 정책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의 도입 및 확대의 논의에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집단의 세부담 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가계의 재무건정성,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가구에서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정보도 조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자료인 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가구단위로 소득세부담을 살펴볼 수 있고 자녀 유무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설문조사에 기반하므로 응답오류로 인해 소득과 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국세청의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정확성이 낮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표 2>는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가구의 소득과 소득세부담을 자녀유무별로 보여준다. 먼저 저출산 대응 관련 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중 20대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가장 낮아 세부담 수준도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연령 20대 유자녀 가구의 경우 평균 소득이 4,987만원으로 평균 소득세는 68.4만원이고 평균 실효세율은 1.4%이다. 가구주 연령 20대 무자녀 가구의 경우는 평균 소득 3,626만원, 평균 소득세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 2.0%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 20대 유자녀 가구가 가구주 연령 20대 무자녀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세부담 수준은 낮는데, 이는 저출산 관련 현행 소득세 제도들이 자녀 여부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이 많은 시기가 아니어서 부담하는 소득세의 수준이 낮다. 그래서 가구주 연령 20대 유자녀가구와 무자녀가구의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를 보면 각각 33만원과 0.6%p 수준에 불과하여 자녀 유무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면세가구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다. 면세가구 비율은 유자녀 가구의 경우 18.5%, 무자녀 가구의 경우 23.3%이다.

가구주 연령 30대의 경우, 사회 및 경제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20대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세부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 30대의 평균 소득과 평균 소득세는 유자녀 가구의 경우 각각 7,590만원과 409만원, 무자녀 가구의 경우 각각 5,538만원과 309만원이다. 가구주 연령 30대의 평균 실효세율은 유자녀, 무자녀 가구 모두 3.4%로 가구주 연령 20대의 경우보다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자녀 가구는 무자녀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평균 실효세율은 무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 대비 소득세의 비율 측면에서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 세부담 차이가 평균적으로 없음을 의미한다. 소득세제는 누진적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실효세율도 높아진다. 하지만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실효세율이 동일하다는 것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소득세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일부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주 연령 30대의 면세가구 비율은 10~12% 수준으로 높지 않다.

20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이 많은 시기가 아니어서  
부담하는 소득세의  
수준이 낮다.

기혼 가구주  
연령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세부담 수준은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표 2> 가구주 연령대별·자녀유무별 소득세부담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유자녀 가구	평균 소득	4,986.6	7,589.8	8,659.2	9,559.9
	평균 소득세	68.4	409.0	581.4	873.2
	평균 실효세율	1.4	3.4	4.1	4.7
	면세가구 비율	18.5	10.0	10.1	10.0
무자녀 가구	평균 소득	3,625.9	5,537.8	5,299.7	7,266.3
	평균 소득세	101.5	308.5	241.5	379.6
	평균 실효세율	2.0	3.4	2.7	3.1
	면세가구 비율	23.3	12.2	15.2	11.8

- 주: 1. 자녀유무는 가구 내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존재하는지 여부로 구분함
- 2. 소득은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3. 실효세율은 소득세 금액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함
- 4. 면세가구 비율은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세가 0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 5.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본고의 초점이 저출산 대응 관련 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20~30대에 있어 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가구주 연령 40~50대에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유자녀 가구주가 무자녀 가구주보다 세부담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령대의 경우 사회 및 경제적 수준이 더욱 안정되는 시기이고 소득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에 의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래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유자녀 가구주의 세부담이 무자녀 가구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주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대체로 가구주가 주 소득자일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혼 가구주의 소득세부담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인 결과는 앞서 가구단위로 살펴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혼 가구주 연령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세부담 수준은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기혼 가구주 연령 20대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내외, 평균 소득세는 58만~105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1.2~1.6%, 그리고 면세자 비율은 27~33% 수준이다. 앞선 결과처럼 기혼 가구주 연령 30대는 기혼 가구주 연령 20대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세부담도 일정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 가구주 연령 30대의 평균 소득은 5,200만~5,500만원, 평균 소득세는 270만~390만원이다. 하지만 평균 실효

<표 3> 기혼 가구주 연령대별·자녀유무별 소득세부담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자녀 유무	20대	30대	40대	50대
유자녀 가구	평균 소득	4,167.3	5,563.4	6,687.5	6,941.4
	평균 소득세	58.4	278.1	495.1	646.7
	평균 실효세율	1.2	3.3	4.2	4.8
	면세자 비율	33.3	20.2	17.8	18.9
무자녀 가구	평균 소득	3,890.6	5,244.3	5,249.2	5,973.0
	평균 소득세	105.8	392.7	311.0	441.5
	평균 실효세율	1.6	4.1	3.4	4.1
	면세자 비율	26.7	11.3	18.3	17.8

- 주: 1. 기혼은 사별, 이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임
- 2. 자녀유무는 18세 미만 미혼자녀가 1명 이상 존재하는지 여부로 구분함
- 3. 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 실효세율은 소득세 금액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함
- 5. 면세자 비율은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세가 0인 경우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세율은 3.3~4.1%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혼 가구주 연령 30대의 면세자 비율은 11~20%로 나타난다. 한편, 유자녀 기혼 가구주가 무자녀 기혼 가구주보다 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기혼 가구주 연령 20대와 30대를 보면, 유자녀 기혼 가구주가 무자녀 기혼 가구주보다 평균 소득이 더 높은 수준임에도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유자녀 납세자와 무자녀 납세자 간 세부담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부담 차이는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p 미만으로 크지 않으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소득세제상 혜택이 크지 않은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장의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혼인률 제고를 통한 출산률 제고까지 고려한다면 미혼자도 저출산 대응 정책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미혼자의 소득세부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미혼 가구원들의 소득, 소득세, 실효세율 등에 대한 평균과 면세자 비율을 보여준다. 미혼 가구원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1,931만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미혼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9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면세자 비율은 33.1%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소득수준이 1,245만원으로 상당히 낮고, 30대 이상에서도 3,000만원 미만 수준으로 앞서 살펴본 기혼 가구주의 소득수준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

미혼 가구원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미혼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소득세제를 통한 조세지원은  
 주로 세부담을 완화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제를 통한 지원규모는  
 세부담 수준에 따라  
 제한이 된다.

<표 4> 미혼자의 소득세부담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평균 소득	1,931.4	1,245.0	2,928.5	2,825.0	2,406.3
평균 소득세	62.9	25.2	124.8	104.5	76.3
평균 실효세율	2.1	1.8	2.4	2.5	2.2
면세자 비율	33.1	40.8	22.7	22.4	26.1

주: 1.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2. 실효세율은 소득세 금액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함  
 3. 면세자 비율은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세가 0인 경우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그리고 면세자 비율은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30대 이상에서는 22~26% 수준으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미혼 가구원의 평균적인 세부담이 낮다는 사실은 미혼자에게 소득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혜택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론적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득세제 지원제도를 통한 혼인률 제고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 V. 저출산과 소득세제

소득세제를 통한 조세지원은 주로 세부담을 완화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제를 통한 지원규모는 세부담 수준에 따라 제한이 된다. 이는 소득세 제도를 통한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은 대체로 혼인과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인 20~30대일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전 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득수준이 낮고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도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높다. 즉, 완화할 소득세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30대의 경우 사회 및 경제적으로 안정되

고 소득수준도 높아져서 세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 규모일 수 있지만 소득세 완전 면제와 같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변화가 있지 않는 한 소득세제를 통한 규모있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제도의 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소득계층의 경우 세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제지원 규모보다 세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높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는 정책적 지원이 없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저출산 대응 소득세제 지원이 자칫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집단을 지원해 주는 상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대부분 소득세 지원제도는 앞서 언급된 문제들로 인해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효과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언급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서 효과적일 수 있는 제도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자녀장려세제이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로 공제 및 감면 제도와 다르게 세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장려세제는 자녀양육의 요건 중 하나인 시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전병목·전영준(2022)은 자녀장려금이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유형에 상관 없이 동일한 소득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자녀의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만 양육비용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sup>8)</sup> [그림 6]은 맞벌이가구 비율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가구주 연령 30~39세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 왔고, 가구주 연령 15~29세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연령층의 2022년 기준 맞벌이가구 비율은 모두 50%를 넘어선다. 신혼부부의 맞벌이가구 비율도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후로는 50%가 넘는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해지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20~30대 및 신혼부부의 맞벌이가구 비율은 최소한 50%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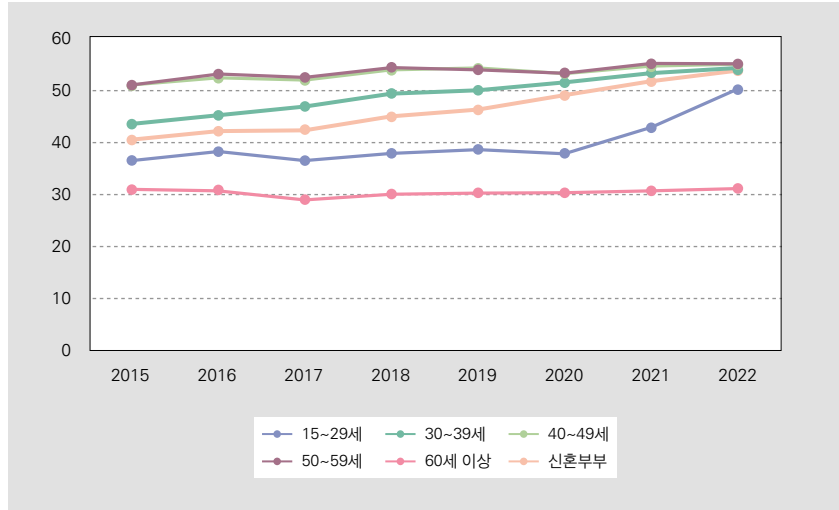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제도의 효과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8) 전병목·전영준(2022), p. 39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세제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맞벌이가구 비율 추이

(단위: %)




주: 연령은 가구주 연령 기준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자녀장려세제가 저출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구를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세제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세수입의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조세정책 이슈이기도 하다.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의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중요한 세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득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장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세제를 통한 조세지원의 한계와 소득세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세수입 확보에 충실하여 재정적 지원제도들의 필요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적

책은 정책대상에 대한 규모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이 조세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접근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으며, 그래서 소득세 제도를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 제Ⅳ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자녀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자녀 여부 또는 자녀 수에 따라 충분한 세부담의 차이가 나도록 소득세제를 개선하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개별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가구의 세부담을 낮추는(또는 순수혜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담 완화, 재정지원 강화 등은 결국 재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필요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개별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가구의 세부담을 낮추는(또는 순수혜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3.

권성준, 「세목별 발전방향: 소득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 2023.

권성준·고지현·송헌재, 「심화과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 수립사업』, 2023.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

전병목·전영준, 『근로자 소득지원정책의 발전방향: 근로장려세제의 확장』, 연구보고서 22-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통계청, 『2023년 9월 인구동향』, 2023.

\_\_\_\_\_,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_\_\_\_\_,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검색일자: 2023. 12. 6.

## 02

#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sup>1)</sup>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  
(hj\_song@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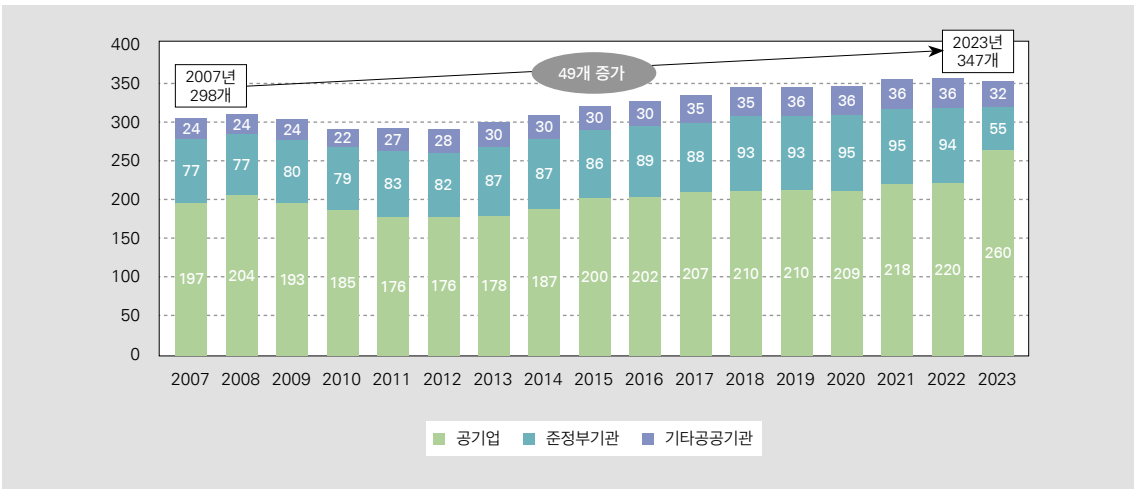
## I. 서론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평균적으로 정원이나 자산규모는 작지만 그 수가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2023년에는 공공기관 관리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 및 기관의 감독 범위 및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그 결과 43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347개 공공기관 중 260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었다.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전체의 74.9% 수준으로 절대적인 수와 비중 면에서 과거에 비해 증

1) 본 원고는 ‘송현진·유은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쟁점과 발전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발간 예정)’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원고임

[그림 1] 기타공공기관 수의 증가(2007~2023년)

(단위: 개소)



주: 2016년, 2017년 및 2021년은 연중 수시 또는 변경 지정된 공공기관을 반영한 12월 말 기준 기관 수로, 당해 연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수와 다름  
출처: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3.

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정기준의 변화는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기획재정부, 2022. 8. 18.)의 일환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한 결과이다. 상향된 지정 기준에 따라 중소형기관(직원 정원 300명 미만)에 해당하던 준정부기관과 일부 공기업이 기타공공기관이 되었다. 기타공공기관 입장에서 이러한 유형 변경은 관리·감독 및 통제의 완화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공운법」상에 대부분의 관리정책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해서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공시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평가, 임원임명 절차 및 재무관리상 관리체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존의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제외되고,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임명은 「공운법」상 절차를 적용하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임명은 설립 근거법령 및 기관 정관에 따르고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등의 대상이 아니다(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공공기관 현황 편람』). 그나마 일련의 변화와 함께 기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해당하던 평가 결과의 알리오시스템 공시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모든 기타공공기관은 2023년부터 경영평가 결과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게 되었다.

기존에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자료의 부족으로 일부 부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는데(박한준 외, 2018; 한승준, 2020), 평가 결과의 알리오시스템 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보의 접근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관리 수단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관한 추적·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현황과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도입 취지를 개괄한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와 함께 전반적인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평가거버넌스 차원과 평가지표 차원의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제Ⅳ장에서 알리오 공시자료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무부처별 2022년도 경영평가 모형의 특징과 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기타공공

상향된 지정 기준에 따라  
중소형기관(직원 정원  
300명 미만)에  
해당하던 준정부기관과  
일부 공기업이  
기타공공기관이 되었다.

공공기관이란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기관의 지정 변경에 따른 경영평가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II.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현황과 경영평가 도입의 취지

### 1.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현황과 역할

공공기관이란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공공기관의 유형 판별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변경되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기준을 기존의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하였고 수입액 기준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는 기존 10억원에

<표 1>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분류기준

유형		지정 기준		
공기업 (32개)	시장형 (13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이상
	준시장형 (19개)		시장형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55개)	기금관리형 (11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위탁집행형 (44개) <sup>1)</sup>			
기타공공기관(260개) <sup>1)</sup>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연구개발 목적기관 (71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주: 1) 부설기관 제외된 수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부설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부설기관 11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3. 1. 30.

<표 2> 주무부처별 2023년 기타공공기관(260개)

부처	2022년	2023년	증감	2023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관명
기재부	2	3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19	21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u>한국학중앙연구원</u>
과기부	33	37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u>국가과학기술연구회</u> ,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u>기초과학연구원</u>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한국건설기술연구원</u> , <u>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u> , <u>한국과학기술연구원</u> , <u>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u> , 한국과학창의재단, <u>한국기계연구원</u> , <u>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u> , <u>한국나노기술원</u>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u>한국생명공학연구원</u> , <u>한국생산기술연구원</u> , <u>한국식품연구원</u> , <u>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u>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u>한국원자력연구원</u> , 한국원자력연구원, <u>한국재료연구원</u> , <u>한국전기연구원</u> , <u>한국전자통신연구원</u> , <u>한국지질자원연구원</u> , <u>한국천문연구원</u> , <u>한국철도기술연구원</u> , <u>한국표준과학연구원</u> , <u>한국한의학연구원</u> , <u>한국항공우주연구원</u> , <u>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u> , <u>한국화학연구원</u>
외교부	2	2	-	재외동포재단(2023년 6월 해산),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2	2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3	3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3	3	-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u>한국국방연구원</u>
행안부	2	2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훈부	1	2	+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문체부	25	28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u>한국문화관광연구원</u>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6	8	+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부	11	13	+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u>한국산업기술시험원</u> , <u>한국세라믹기술원</u>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19	24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u>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u> ,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u>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u>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식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한국보건의료연구원</u>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환경부	7	7	-	<u>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u> , <u>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u>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원환경청산업진흥(주), 한국상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7	7	-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부처	2022년	2023년	증감	2023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관명
여가부	2	5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13	15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8	15	+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b>국립해양생물자원관</b> ,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6	8	+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국조실	25	25	-	<b>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b>
방통위	0	1	+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3	3	-	<b>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b>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b>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b>
금융위	2	3	+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정위	1	1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3	4	+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1	1	-	한국원산지정보원
방사청	2	2	-	<b>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b>
소방청	0	1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1	1	-	한국문화재단
농진청	0	1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특허청	4	6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b>한국지식재산연구원</b> , <b>한국특허기술진흥원</b>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2	3	+	<b>(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b>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청	1	3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합계	216	260		

주: 1.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법」 폐지로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고 제정 법률인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신설 출범한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 산하)는 2023년 6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됨  
 2. 밑줄 표시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 1개)은 2023년 1월 신규 지정된 기관임  
 3. 초록색 이탤릭체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파란색 이탤릭체는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보라색 이탤릭체는 부처 직할 연구원 24개임  
 4.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이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과학기술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정 해제됨

출처: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공공기관 현황 편람』

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 가운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경우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정한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은 「공운법」 제정 초기에 별다른 개념규정이나 상세한 요건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에 제외된 ‘기타’기관들을 포함하는 잔여적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따라서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관이 많다. 하지만 기관 규모의 차원과 별도로 법률에 따라 책임 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을 그저 작은 기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교육부 산하의 국립병원과 치과병원에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큰 규모의 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 생활 곳곳에 연관된 다양한 기관이 속해 있어 그 역할 면에서 중요성이 높다. 주무부처별 2023년 기타공공기관의 상세 목록은 <표 2>와 같다.

한편, 지정 기타공공기관의 수는 2007년 「공운법」 제정 당시에 197개에서 2013년까지 다소 감소했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변경된 공공기관 지정기준으로 인해 43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어 총 260개로 증가했다.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지출(수입)규모

기관 규모의 차원과 별도로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을 그저 작은 기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표 3> 기타공공기관의 지출·수입 및 임직원 정원·현원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A)	2022년(B)	증감(B-A)
지출(수입)규모	6,008,336	6,405,259	7,307,269	7,588,782	7,919,138	330,356 (4.4)
기타공공기관	1,025,617	1,273,470	1,741,164	1,581,203	1,492,945	(감) 88,258
임직원 정원	379,377	415,875	43,081	438,663	445,144	6,481 (4.08)
기타공공기관	134,676	158,252	167,908	172,294	175,936	3,642 (6.91)
임직원 현원	355,832	388,861	404,736	411,573	415,881	4,308 (3.98)
기타공공기관	123,571	142,380	153,016	156,138	158,477	2,339 (6.42)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 및  
현원과 관련해서  
기타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40%에 달하는  
규모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종합할 때  
기타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이도 점차 증가하여 2022년 예산기준 공공기관 전체 예산 791조 9,138억원의 약 20% 수준(149조 2,945억원)으로 2021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의 지출규모는 기관별 편차가 큰 편인데, 전체 지출(수입)의 상위 5개 기관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체 기타공공기관 지출규모의 71.6%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기관은 매우 영세한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 및 현원과 관련해서 기타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40%에 달하는 규모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종합할 때 기타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도입 취지와 제도의 변천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사후적 경영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경영평가의 도입에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지배구조를 근대화하고 경영 효율성 관리의 체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중요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이원희·라영재, 2015). 한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2013년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경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 12. 11) 및 실행계획(2013. 12. 31.)」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sup>2)</sup> 이에 따라, 「공운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와, 현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통합된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2012. 1. 31. 일부개정)」 제21조의2(경영계약 체결 등)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자체평가가 실시되었다.

2014년 2월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타 법령에 의한 평가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실시하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항목의 선택 및 가중치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단, 정부의 권장 정책 및 각종 지침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항목은 모든 기관에 반드시 포함하고,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 등의 지

2) 2014년 이전에 기타공공기관의 관리 및 평가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2012년까지 금융공기업 성격, 준정부기관 성격, 자산 1천억원 이상의 기타공공기관 등 17개 기관은 계약경영제하에 기관장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배점의 대부분이 기관평가 지표에서 준용되어 결국 기관평가 수검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체감한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은 비슷한 시기에 자체적인 경영평가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었다.

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준수토록 하였다. 또한,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취지에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의 목적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통제적 목적이 공존했다.

하지만 「공운법」의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에 관한 지침들이 통합된 이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사라졌다. 기타공공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되었던 2013년에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마련되었던 법적 근거와 2014년과 2016년에 발간되었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제도 권장(안)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 평가는 「공운법」 제15조 제1항의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와 제15조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등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부 부처의 경우에 「(각 부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정해 이를 근거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운영상의 특수성, 규모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의 여지가 열려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처별로 제도의 분화가 일어나기 보다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닮아가는 제도 운영의 동형화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있다(박한준 외, 2018). 이에, 다음 장에서는 경영평가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방향에 관해 평가운영 거버넌스 차원과 평가지표 차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경영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복대리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고려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관료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료조직의 예산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취지에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의 목적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통제적 목적이 공존했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역시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운영 체계의 개선과  
발전적 정책방향의  
적용이 필요하다.

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Niskanen, 1975). 그리고 예산극대화는 조직의 방만한 운영을 통한 나태함, 초과고용, 추가급여 등 정부자원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Migué, Bélanger, & Niskane, 1974; Borge, Falch, & Tovmo, 2008). 경영평가는 이러한 방만함을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다. 더 나아가 조직의 관리자는 평가를 통해 조직의 역량이 증진되고,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성과는 개인 또는 조직의 의도된 행동이 역량에 기반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Van Dooren, Bouckaert & Halligan, 2010). 경영평가를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측면에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이다(곽채기, 2003; 라영재·윤태범, 2013). 만약 경영평가의 운영이 성과 향상이나 방만함을 통제하는데 실질적 의미의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제도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다(김택규·이정욱, 2017).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40여년간 발전해 오면서 관리 체계상의 모순과 오류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반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역시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운영 체계의 개선과 발전적 정책방향의 적용이 필요하다(박한준 외, 2018). 신공공관리론에서의 능률성과 효율성의 가치는 후기 신공공관리론으로 넘어오면서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와 이를 위한 정부중심의 재집권화의 필요성을 제안한다(Hood, 1991; 이종수, 2010). 따라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주무부처의 관리책임 및 평가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체계 동형화를 지양하고, 기관규모의 편차나 사업의 특수성 등 태생적 차이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평가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박한준 외, 2018).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주목한 한승준(2020)의 연구에서는 평가 모형의 고도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현 경영평가체계가 문화, 예술, 체육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 기관과 평가위원 진단을 통한 지표개선을 거쳐 맞춤형 평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경영평가제도 개선의 논리를 종합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거버넌스 차원에서 경영평가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평가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일관된 평가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 경영평가에서는 평가위원의 교체가 잦을 뿐만 아니라 연임되더라도 동일 평가유형에 재배치되는 비율이 낮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이오·유승현, 2010). 따라서 연구자들은 평가위원의 출신 및 전공분야의 편중으로 전문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명시적인 기준에 따른 선발이 필요하고(박미정, 2010),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평가가이드북을 개발해 평가단이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라영재·윤태범, 2013).

다음으로 평가지표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박미정, 2010; 이오·유승현, 2010). 평가지표는 평가대상 기관을 향후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에 주된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기관별 산업특성, 설립목적, 기관의 역사 등의 차이가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가중치 차이도 미미한 실정으로 맞춤형 지표가 설정되지 못해 일률적·서열화 방식의 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박미정, 2010).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관대화 경향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983년 상반기부터 1995년까지 14회에 걸친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1983년 3개 기관과 1988년 1개 기관에 불과했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는 중심화 경향이 나타났다(이원희·라영재 외, 2015).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양극단의 평가 결과를 받는 공공기관의 수는 적은 편이며,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에 비해 우호적인 평가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한준 외, 2018). 그밖에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중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비계량지표의 평가 없이 계량평가만 이루어질 경우 특정 유형의 기관이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는 불공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별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계량지표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이오·유승현, 2010; 라영재·윤태범, 2013).

더욱이 평가거버넌스와 평가지표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대리인 문제 차원에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데(최근호, 2023), 비상설기구인 평가단은 매년 평가단 선정 과정에서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주무부처의 평가 담당공무원도 비교적 짧은 임기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크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경영평가단의 전문성 확보와 평가지표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거버넌스와 평가지표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2년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평가  
운영양상이 어떠한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안 평가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평가 거버넌스의 안정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평가를 기획 및 추진해야 하는 주무부처와 평가단은 계속해서 교체되는 가운데, 대리인인 공공기관은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 평가 종료 이후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관에 유리한 지표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넘어가고, 불리한 지표는 근거를 들어 개선해 나가게 되면 갈수록 기관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원희·라영재, 2015). 하지만 기존에는 전 부처의 기타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평가 거버넌스와 지표 및 평가 결과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2022년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평가 운영양상이 어떠한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에 관해 평가 거버넌스 측면과 지표 측면을 중심으로 현실 태를 검토하고, 평가 제도상의 특성과 평가 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IV. 주무부처별 경영평가 모형의 특성과 평가 결과와의 관계

### 1.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모형

#### 가. 평가 거버넌스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주무부처는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평가단을 선임하며, 평가 결과를 심의 및 확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수행을 위해 각 부처는 대부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인 평가단을 선임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대상 기관의 수와 기타공공기관의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의 규모는 달라진다. 대체로 평가단장 1명 이외에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분야의 평가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여건에 따라 계량지표의 검토를 위한 회계사, 경영관리의 특정 분야를 담당하기 위한 노무사가 평가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평가 대상기관의 수 외에도 기관별로 별도평가를 운영하거나, 평가유형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규모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경우 2022년도 평가에 총 19개의 기관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26명의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이는 평가단의 정

<표 4>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실태(2022년도 경영평가)

부처	평가대상 기관 수	평가단 규모	평가유형 구분
기재부	2	-	기관별 별도평가
교육부	19	26	복수유형(병원, 교육기관)
과기부	33	기관별 4~5	기관별 별도평가
외교부	2	10	단일유형
통일부	2	5	단일유형
법무부	3	-	-
국방부	3	-	-
행안부	2	15	단일유형
보훈부	1	3	단일유형
문체부	25	43	유형구분
농식품부	6	14	단일유형
산업부	11	11	유형구분
복지부	19	15	단일유형(부분평가기관 존재)
환경부	7	9	유형구분
고용부	7	6	단일유형
여가부	2	5	단일유형
국토부	13	10~20	유형구분
해수부	8	7	단일유형
중기부	6	7	단일유형
국조실	25	-	별도평가
원안위	3	10	단일유형
금융위	2	10	단일유형
공정위	1	-	단일기관
식약처	3	-	단일유형
관세청	1	5	단일기관
방사청	2	-	-
문화재청	1	7	단일유형
특허청	4	6	단일유형
기상청	2	8	단일유형
산림청	1	7	단일유형

주: 1.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일부 기관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평가를 실시

2.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평가위원 정보는 비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가위원 정보 미확인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주무부처는 경영평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평가단을 선임하며,  
평가 결과를 심의 및  
확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수행을 위해  
각 부처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인 평가단을  
선임한다.

보를 공개하고 있는 부처 가운데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교육부 평가에 참여한 26명의 평가단원 중에서 20명의 평가위원은 경영관리팀 또는 주요사업팀으로 각각 경영관리 및 사회적 책임 비계량지표와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평가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은 계량지표를 전담하여 검토에 참여했다. 부처별 평가편람과 정보공개청구 및 부처 담당자 의견조회 등을 통해 파악한 평가단의 규모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 나. 평가지표

기타공공기관 평가지표 일반적인 구성은 <표 5>와 같다. 정권별로 강조되는

<표 5>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예시)

범주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배점합계
경영 관리	1.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8		8
	2. 조직 및 예산관리	10	4	14
	(1) 조직인적자원관리	6	2	8
	(2) 예산 및 재무관리	4	2	6
	3.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7	3	10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2) 총인건비 관리		3	3
	(3) 노사관계	3		3
	4. 사회적 책임과 성과	11	8	19
	(1) 안전 및 환경	3	1	4
	(2) 동반성장과 지역발전	3	2	5
	(3) 윤리투명경영	3	1	4
	(4) 국민참여와 사회공헌	2		2
	(5) 국민만족도		4	4
소계		36	15	51
주요 사업	1. 주요사업(1)	9	6	16
	(1) 적정성	9		10
	(2) 성과		6	8
	2. 주요사업(2)	8	4	14
	(1) 적정성	8		9
	(2) 성과		4	6
	3. 주요사업(3)	7	4	14
	(1) 적정성	7		8
	(2) 성과		4	6
	4. 주요사업(4)	7	4	15
	(1) 적정성	7		8
	(2) 성과		4	6
	소계		31	18
가점사항(새정부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5		5
합계		67	33	100

출처: 부처별, '2022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중심으로 저자가 재구성

지표의 배점 차이는 존재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표의 체계는 대체로 유사한 구조를 유지해 왔다. 먼저 평가의 범주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구분하고, 주요사업지표는 개별기관의 현안과제를 반영해 세부 지표별로 가중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각 범주는 다시 계량과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세부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고객 만족도, 업무효율,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환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성, 수익성, 공공성 강화 노력을 살피도록 구성했다. 하지만 주무부처별로 지표의 구성과 배점은 상이하다.<sup>3)</sup> <표 5>는 일반적인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성과물인 주요사업지표는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표 6> ~ <표 8>에서 각각 교육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의 실제 주요사업지표를 소개하였다.

교육부는 평가대상 기관이 19개로 많은 편인데 반해 환경부는 평가대상 기관이 7개로 평가 규모가 작은 편이며,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평가에서 단 2개의 기관만 평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예시 기관은 각 부처의 알리오 공시목록에 첫 번째 기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교육부의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이다. 교육부 경영실적평가는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병원과 교육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병원 유

평가지표의 일반적인 구성은  
평가의 범주를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구분하고,  
개별기관의  
현안과제를 반영한  
주요사업지표 등에서  
세부 지표별로  
가중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표 6>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주요사업지표 예시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점수 합산
		배점	득점	배점	득점	
1. 교육사업	(1)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	12	8.40			8.40
	(2)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3	6	6.00
	(3)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이수율			3	결측	결측
2. 연구사업	(1) 연구사업 수행의 적정성	12	8.40			8.40
	(2) 교수연구실적			4	4	4.00
	(3) 교수 1인당 연구비 집행실적			2	1.84	1.84
3.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	(1) 진료사업 수행의 적정성	13	10.40			10.40
	(2) 의료기관 인증			5	결측	결측
	(3)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8	4.06	4.06
소계		37	27.20	25	15.90	43.10

출처: 알리오 공시자료

3) 예시기관의 주요사업 지표 배점을 보더라도 <표 6>의 교육부 사례의 경우 주요사업 배점의 합계가 비계량 37점, 계량이 25점, <표 7>의 환경부 사례의 경우 비계량이 20점, 계량이 30점, <표 8>의 여성가족부 사례의 경우 비계량이 31점, 계량이 18점으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배점 자체는 부처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주요사업지표는 크게 비계량부문과 계량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계량지표는 주요사업의 추진계획과 집행, 성과와 환류 차원에서 적정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계량지표는 세부 실행과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표 7> 환경부 기타공공기관 주요사업지표 예시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점수 합산
		배점	득점	배점	득점	
1.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다양성 관리 사업	(1) 사업성과관리의 적정성	8	5.6			5.600
	(2)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8	8	8.000
	(3) 담수생물 다양성 관리			4	4	4.000
2. 담수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사업	(1) 사업성과관리의 적정성	7	5.6			5.600
	(2) 담수생물배양체 확보 및 후보소재 발굴			6	4.964	4.964
	(3) 상용화 활용기술 사업화 연구실적			4	4	4.000
3. 생물자원관 전시 및 교육사업	(1) 사업성과관리의 적정성	5	3.5			3.500
	(2) 수요맞춤형 생물자원 전시			5	5	5.000
	(3) 생물다양성 특화교육			3	3	3.000
소계		20	14.7	30	28.964	43.664

출처: 알리오 공시자료

형은 지역별 국립병원 및 치과병원을 하나의 그룹에서 평가한다. 다만, 2022년도 평가의 경우 치과병원의 비계량 가중치가 국립대학병원 가중치에 비해 3점 더 높고, 대신 계량지표의 가중치는 3점 더 낮았다. 이와 같이 평가지표 가중치는 주무부처별 및 평가유형별로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주요사업지표는 치과병원 유형의 타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사업지표는 크게 비계량부문과 계량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계량지표는 주요사업의 추진계획과 집행, 성과와 환류 차원에서 적정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계량지표는 세부 실행과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도 평가에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비계량에서 27.2점, 계량에서 15.9점을 획득하여 총 43.1점을 획득했다.

다음으로 환경부 예시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주요사업지표는 위의 <표 7>과 같았다. 환경부는 평가 대상 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 현원 200명을 기준으로, 큰 규모의 기타공공기관인 1유형과 작은 규모의 기타공공기관인 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당초 2유형에 속하였으나 편람 수정과정에서 1유형으로 변경되었다. 1유형과 2유형은 경영관리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를 평가하느냐 여부에 차이가 있고, 1유형의 주요사업 배점은 총 50점, 2유형의 주요사업 배점은 총 52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비계량과 계량을 포함해 50점 배점에서 43.664점을 획득

<표 8> 여성가족부 기타공공기관 주요사업지표 예시

평가지표		비계량		계량		점수 합산
		배점	득점	배점	득점	
1. 공공교육 사업	(1) 사업수행의 적정성	9	7.2			7.2
	(2) 양성평등 인식변화 수준			6	6	6.0
2. 전문강사 양성사업	(1) 사업수행의 적정성	8	6.4			6.4
	(2) 전문인력 성별 다양성 제고 성과			4	4	4.0
3. 스마트교육 사업	(1) 사업수행의 적정성	7	5.6			5.6
	(2) 대상별 스마트교육 확대 성과			4	4	4.0
4.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1) 사업수행의 적정성	7	4.9			4.9
	(2) 젠더온 콘텐츠 활용 성과			4	4	4.0
소계		31	24.1	18	18	42.1

출처: 알리오 공시자료

주요사업을  
평가한다는 큰 틀은  
주무부처별로 동일하지만  
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에는  
부처별 차이가 존재한다.

하였으며, 계량지표의 득점은 28.964점을 획득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요사업지표는 다음 <표 8>과 같았다. 2022년도에 여성가족부는 총 2개의 기관만을 평가했다. 그 중 하나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경우에 앞선 교육부와 환경부의 사례에서 각각 3개의 사업에 대해 1개의 비계량지표와 2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한 것과 달리 4개의 사업에 대해 1개의 비계량지표와 1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렇듯 주요사업을 평가한다는 큰 틀은 주무부처별로 동일하지만 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에는 부처별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계량지표에서 만점인 18점을 받았다.

## 2. 경영평가의 결과와 환류

평가단은 각 기관이 제출한 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1차 서면 심사 이후에 2차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적의 사실 여부 및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계량지표의 경우 가중치에 따라 득점을 계산한 값을 평가 결과로 합산하게 되고, 비계량지표의 경우 9등급으로 A+~E0까지 등급을 매긴다. 최종 결과는 경영관리 계량·비계량 점수와 주요사업 계량·비계량 점수의 합산 및 가중치 계산을 통해 5~6단계로 종합한다. 예를 들어 6단계의 평가 등급을 채택하는 경우 평가 결과는 탁월 (S), 우수 (A), 양호

평가 결과의 환류는

- 1) 성과확산 및 경영개선유도,
- 2) 성과급 지급,
- 3)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B), 보통 (C), 미흡 (D), 아주미흡 (E)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평가 결과의 환류는 1) 성과확산 및 경영개선유도, 2) 성과급 지급, 3)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성과확산 및 경영개선유도와 관련해서 평가 결과 통보 후에 평가 결과가 경영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에 기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차년도 평가 시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문화재청,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원안위, 특허청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에 활용되는데 준정부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경영평가 등급이 탁월 (S)인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는 전년도 기본연봉 기준의 50%를 성과급으로 받고, 직원들은 전년도 월 기본급 및 기준 월봉의 100%를 받는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우수 (A)인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는 48%, 직원들은 80%를, 양호 (B)인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는 기본연봉의 36%, 보통 (C)인 경우 24%를 받는 식이다. 단, 평가 결과가 미흡 (D) 또는 아주미흡 (E)인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밖에도 우수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업무 유공자로 장관상 수여 및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힌 부처도 있었다. 한편, 평가 결과가 연속적으로 미흡한 기관의 경우 평가 편람 및 지침상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를 의결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별도평가를 진행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 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은 제외하였고, 기관장의 임기인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 방위사업청도 제외하였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요약 자료만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주요사업의 계량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예술의 전당 등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별도평가를 추진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 평가에서는 경영관리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특점을 확인할 수 없는 금융위 산하 기타공공기관 2개소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모형과 평가 결과 간의 관계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모형과 평가 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알리오에 공시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2022년도 기타공공기관 편람 및 경영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2022년도에 지정된 기타공공기관 30개 부처의 216개 기관 가운데 20개 부처의 116개 기관<sup>4)</sup>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예외적으로 평가단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구축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포함된다. 먼저, 기관의 특성요인이다. 기관의 특성은 공공기관의 유형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조직의 규모와 고유사

<표 9> 변수의 설정

구분	변수	측정방법
기관 특성	조직규모(명)	2022년 알리오 공시된 조직 정원
	고유사업지출(백만원)	2022년 알리오 공시된 고유사업 지출
	수입 중 정부 순지원(%)	2022년 알리오 공시된 정부 순지원 비율
	사업유형	1=시장경쟁형 2=국민생활증진형 3=산업진흥형 4=안전·평가·시설기반서비스형
평가 모형	주무부처별 평가 규모	주무부처 산하 평가 대상 기관의 수(개소)
	평가단 규모	평가위원의 수(명)
	평가 유형 구분 여부	평가 유형구분 여부 1=유형구분 또는 기관별 개별평가, 0= 단일유형(미구분) 또는 1개 기관만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	주요사업 계량 득점	주요사업 계량 획득점수
	주요사업 계량 득점비율	주요사업 계량 획득점수/가중치(배점)
	경영평가 총점	경영평가 총점 또는 등급을 환산한 <sup>1)</sup> 점수

주: 1)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총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급만 공개한 기관은 S등급 95점, A등급 85점 등으로 최종등급의 점수구간의 중간값을 활용하였음

기관의 특성은 공공기관의 유형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조직의 규모와 고유사업지출 금액을, 평가모형의 특성에 관해서는 주무부처 내의 평가대상 기관의 수, 평가위원단의 규모 및 평가 유형 구분 여부를 고려하였다.

업지출 금액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수입 중 정부 순지원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수입 비중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고객만족도조사의 (구)기관코드를 근거로 각 기타공공기관을 경쟁형, 국민생활증진 및 연구개발형, 산업진흥형, 안전·평가관리·시설기반서비스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모형의 특성에 관해서는 주무부처 내의 평가 대상 기관의 수, 평가위원단의 규모 및 평가 유형 구분 여부를 고려하였다.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는 경영평가 총점이 공개된 경우에는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등급만 공개된 경우에는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S등급인 경우 95점, A등급인 경우 85점으로 환산하였다. 주요사업 계량 평가 항목은 기타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성과물일 뿐만 아니라, 상황적(Bottom-up) 방식의 지표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전략적 행태와 평가단의 객관적 평가 역량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총점 등급과 별도로 고려하였고, 득점과 득점률<sup>5)</sup>을 변수화했다.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먼저, 2022년도 일반정규직정원을 기준으로 조사된 조직의 규모는 최소 33명~최대 8,337명인 것으로

5) 기관별 지표 가중치 차이를 고려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득점률을 계산하였다.

평가대상 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유형을 구분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평가대상 기관의 수가 평가모형을 유형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유사업지출의 경우 평균 1조 631억 5,900만원으로 최소 42억 2,900만~16조 728억 2천만원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에는 직원정원과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 중에서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자체수입액은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가 아니므로 본 조사에서는 수입 중 정부 순지원 비중을 고려하였다. 정부 순지원 비중은 수입 합계 대비 정부 지원 수입을 의미하며 평균 56.9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유형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조사의 (구)기관코드를 고려하여 시장경쟁형, 국민생활증진형, 산업진흥형, 안전·평가·시설기반서비스형으로 구분하였고 자료에 포함된 기관 가운데서는 시장경쟁형 기관이 15%, 국민생활증진형 기관이 39%, 산업진흥형 기관이 20%, 안전·평가관리·시설기반서비스 유형의 기관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모형에 관련하여서는 평가대상 기관의 수는 적게는 1개 기관에서 많게는 33개 기관으로 평균 14.49개 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가단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15명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에서의 평균은 19.53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단원의 수는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규정과 평가편람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한 후 주무부처의 담당 공무원의 회람을 통해 평가단 규모를 재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2022년도 경영평가 보고서에 평가단의 명단이 공개된 경우 이를 통해 보정 작업을 거쳤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처의 평가단 규모는 확인할 수 없어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평가유형은 부처에 따라서 단일한 평가모형을 모든 기타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몇 가지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구분하였다. 부처별 평가편람에 따르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인력규모, 설립목적, 업무 성격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해 평가를 추진하고 있었다. 대체로 교육부 19개 기관, 국토교통부 13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11개 기관, 환경부 7개 기관 등으로 평가대상 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유형을 구분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평가대

<표 10>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기관 특성					
조직규모(명)	116	611.51	1469.37	33	8337
고유사업지출(백만원)	116	163159.00	306245.90	4229	1672820
수입 중 정부 순지원(%)	116	56.94	38.21	0	100
사업유형					
시장경쟁형	116	0.15	0.36	0	1
국민생활증진형	116	0.39	0.49	0	1
산업진흥형	116	0.20	0.40	0	1
안전·평가·시설기반서비스형	116	0.27	0.44	0	1
평가 모형					
주무부처별 평가 규모	116	14.49	8.56	1	33
평가단 규모 <sup>1)</sup>	110	19.53	13.47	4	43
평가 유형 구분 여부	116	0.53	0.50	0	1
평가 결과					
주요사업 계량 배점	116	26.12	4.77	16	44
주요사업 계량 득점	116	23.64	5.41	11.42	40.62
주요사업 계량 득점비율	116	90.21	10.51	57.46	100
경영평가 총점(종합점수)	116	77.18	7.06	55	95

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평가단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 5개 존재하였음  
출처: 알리오 공시, 부처별 경영평가 편람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가 구성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사업 계량의 배점과 득점을 조사하였고, 이렇게 획득한 점수를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득점률을 계산하였다.

상 기타공공기관이 19개로 평가대상 기관 수가 많은 편이나 별도의 유형구분 없이 평가를 운영하고 있어서 평가대상 기관의 수가 평가모형을 유형화시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사업 계량의 배점과 득점을 조사하였고, 이렇게 획득한 점수를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득점률을 계산하였다. 먼저 주요사업 계량 항목의 배점은 적게는 16점에서 많게는 44점으로 평균 26.12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의 득점은 최소 11.42점에서 최대 40.62점으로 평균 23.64점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주요사업 계량 득점비율의 경우 57.46%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도 있었지만, 모든 항목을 충족한 기관도 존재했다. 평균적으로는 90.21% 가량의 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점수의 산정에는 경

소위 관대화 경향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소수의 기관을  
평가할 경우  
대체로 좋은 점수를 주고  
여러 기관을 평가할수록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엄밀한 통제요인을  
고려한 재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영평가 보고서에 경영관리 계량·비계량 점수 및 주요사업 계량·비계량 점수를  
합산한 값이 포함된다. 경영평가의 총점은 평가보고서의 공개범위에 따라서 최  
종 점수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도 있었지만 항목별 득점만 제시되고 합계가 계  
산되어 있지 않거나 등급으로만 결과를 공개한 기타공공기관이 존재하여, 일부  
변환을 거쳐 값을 도출하였다. 세부 점수를 공개하는 대신 등급만을 공개한 경  
우에는 S등급 95점, A등급 85점과 같이 등급 점수구간의 중간값을 환산점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관의 특성 및 주무부처의 평가모형과 경  
영평가의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개별 기타공공기관의 특  
성에 관한 요인인 조직의 규모, 고유사업지출금액, 정부 순지원 비율 및 4가지  
기관유형(시장경쟁형, 국민생활증진형, 산업진흥형, 안전·평가·시설기반서비스  
형) 가운데 경영평가 등급(총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고,  
주요사업 계량의 득점률과 정부 순지원 비율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  
었다. 정부 순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주요사업 계량의 득점률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주무부처의 평가 모형의 특성에 관한 요인으로 주무부처 평가 규모  
(대상기관의 수)와 평가단 규모(평가위원의 수), 평가 유형구분(평가지표를 기  
관에 특성별로 2개 이상 적용)하는지 여부와 경영평가 등급(총점)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더 많은 기관에 대해 평가할수록, 평가위원단의 규모  
가 클수록 등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사업 계량 득점률에 대해서  
도 동일한 방향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평가 유형구분(평가지표  
를 기관에 특성별로 2개 이상 적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요사업 계량 득점률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특성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정부 순지원 비율만 경영평가의 결과와 상  
관관계가 나타난 것에 반해서 주무부처의 평가 모형상의 특징인 평가 대상기관  
의 수와 평가위원단 규모 등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관계를 보여준 것은 흥미  
로운 결과이다. 물론 경영평가의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이 엄밀한 평가이고, 점수  
가 높은 것이 관대한 평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소위 관대화 경향에 따라  
서 주무부처가 소수의 기관을 평가할 경우 대체로 좋은 점수를 주고 여러 기관  
을 평가할수록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엄밀  
한 통제요인을 고려한 재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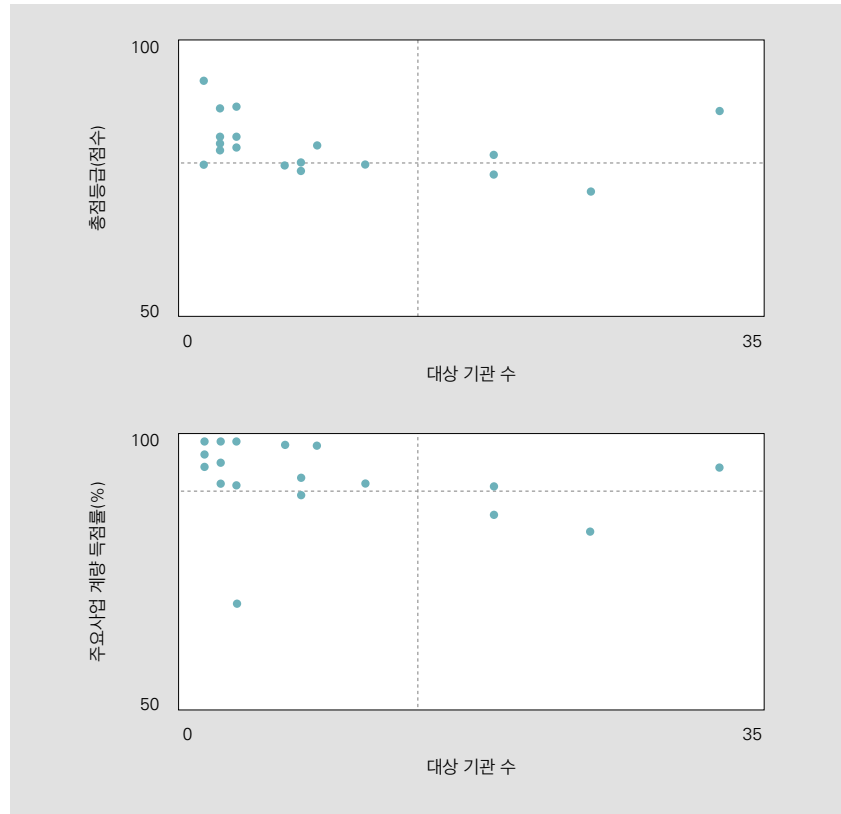
<표 11>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경영평가 총점	1												
(2) 주요사업 계량득점률	0.5178*	1											
(3) 주요사업 계량 배점	0.1767	0.1505	1										
(4) 주요사업 계량 득점	0.4029*	0.6020*	0.8754*	1									
(5) 조직규모	0.1011	-0.0474	0.0052	-0.0270	1								
(6) 고유사업지출	0.1467	0.0022	0.0482	0.0405	0.7969*	1							
(7) 정부 순지원	-0.0739	0.1885*	0.0017	0.0970	-0.4587*	-0.4910*	1						
(8) 시장 경쟁형	0.0370	-0.1306	0.0613	-0.0219	0.6508*	0.4998*	-0.4224*	1					
(9) 국민생활증진형	-0.0478	-0.0427	-0.0277	-0.0373	-0.2232*	-0.1909*	0.2653*	-0.3299*	1				
(10) 산업 진흥형	0.0318	0.1034	0.0784	0.1146	-0.1626	-0.0121	0.0829	-0.2061*	-0.3959*	1			
(11) 안전·평가·기반형	-0.0056	0.0583	-0.0892	-0.0447	-0.1278	-0.1798	-0.0293	-0.2503*	-0.4808*	-0.3003*	1		
(12) 주무부처 평가 규모	-0.2700*	-0.3527*	0.0516	-0.1415	0.1216	0.0894	-0.0373	0.1163	0.0351	0.1794	-0.2932*	1	
(13) 평가단 규모	-0.3469*	-0.4695*	-0.0445	-0.2814*	0.0761	0.0171	0.0234	0.0732	0.1144	0.0380	-0.2238*	0.7780*	1
(14) 평가 유형 구분	-0.1547	-0.3236*	-0.1437	-0.2837*	0.2222*	0.1309	-0.1685	0.1913*	-0.2146*	0.0740	0.0168	0.5710*	0.6029*

주: \* p < 0.05

이 연구는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증가에 앞서 현 시점에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2022년도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인 총점등급과 주요사업 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기타공공기관의 특성 및 주무부처의 평가추진 모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2] 주무부처별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 수에 따른 평가 결과분포



위의 그래프는 각각 부처별로 경영평가의 총점과 득점률의 평균을 계산하여 대상기관 수의 증가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점부터 차례로 과기부, 문체부, 복지부와 교육부를 나타낸다. 과기부는 평가대상 기관이 가장 많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연구목적 기관으로 별도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연구 데이터에는 단일 기관별로 평가를 진행한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만 포함되어 있어 예외로 본다면 나머지 기관들은 가장 많은 기타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부처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체로 평균 이하 또는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V. 결론

이 연구는 기타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평가대상 기관의 증가에 앞서 현


시점에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2022년도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인 총점등급과 주요사업 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기타공공기관의 특성 및 주무부처의 평가추진 모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의 결과 기관의 특성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정부 순지원 비율만 경영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서 주무부처 평가 모형상의 특징인 평가 대상기관의 수와 평가위원단 규모 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평가 점수의 높고 낮음을 평가의 완결성이나 엄격성으로 치환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평가 규모와 평가의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단순히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결과인지,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평가단을 선임한 결과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도의 분화와 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의 수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 사용된 지표의 변화와 점수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위해 어떠한 설계가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군이 많은 경쟁구도가 존재하도록 설계된 평가 모형과 개별 기관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평가를 운영 중인 부처의 평가 모형의 비교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에 맞는 평가 모델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연구목적 기관의 경우 중간조직을 통해 유사한 목적을 지닌 기관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전 부처의 기타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평가지표에 한해 통합 평가를 진행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기관을 집단화하여 중간조직을 통한 평가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가능했던 기저에는 올해부터 시작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의 공시 도입이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 향후에도 평가 결과의 연속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관리 중인 경영평가에 관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성과관리 개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게시용 경영평가 보고서의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업로드용 약식 보고서를 게시하거나 평가개선보고서 등을 게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표의 구성과 배점 및 산출방식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추적을 통해 경영평가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 및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 기관의 수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 사용된 지표의 변화와 점수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위해 어떠한 설계가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가 성과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평가 결과로 생산되는 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방법 제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공공부문의 경영평가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의 하나인 성과 및 결과중심의 관리에 근거한다. 성과관리는 다른 신공공관리 개혁 가운데 비교적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오영민 외, 2014). 하지만 관리 주체의 집권화와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때, 그 효과는 반감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집권화된 공공기관 평가의 지형하에서 개별부처의 성과관리 역량 발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자, 경영평가 결과물을 알기 쉽게 가공해 이를 정치인 및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여지가 있다. 경영평가를 하는 것만큼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무부처가 성과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평가 결과로 생산되는 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방법 제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회를 중심으로 별도평가가 진행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24개 소속 출연연구기관 및 1개 부설기관과 1개 대학원(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며 ①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 ②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③ 평가 실시, ④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확정, ⑤ 평가 결과의 확정 및 제출, ⑥ 평가 결과의 활용, ⑦ 평가 결과의 환류 단계를 거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원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경우 21개 출연기관과 4개의 부설기관에 대해 임무중심형 평가를 진행한다. 신임 기관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임기 내 달성 목표를 명시한 연구성과계획서를 확정하고, 중간컨설팅을 거쳐 임기 말 총 3회 차수별 실시되는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역량을 높이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021년부터는 기관운영평가(3년)와 연구사업평가(6년)로 이원화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곽채기,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 성과」, 제15권 제1호, 『공기업논총』, 2003, pp. 49~9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3.
- 기획재정부,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8. 18.
- \_\_\_\_\_,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3. 2. 3.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3.
- 김택규·이정욱, 「경영평가제도의 시행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3호, 2017, pp. 81~104.
- 라영재·윤태범, 『정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 모형 개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발간 예정).
- 박미정,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0.
- 박한준,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박한준·허경선·하세정·오영민,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송현진·유은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쟁점과 발전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발간 예정).
- 오영민·박노욱·원종학·하연섭·이혜영·조윤직,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이오·유승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08년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연구원, 2010.
- 이원희·라영재 (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회고와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이종수, 「탈신공공관리(Post-NPM) 개혁 전략의 모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2010, pp. 29~47.
- 최근호, 「현안분석: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한승준,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합리성 제고 방안: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30권 제1호, 2020, pp. 75~97.


Borge, Lars-Erik, Torberg Falch, and Per Tovmo., “Public sector efficiency: the roles of political and budgetary institutions, fiscal capacit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Public Choice*, 136, 2008, pp. 475~495.

Hood, Christopher.,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1991, pp. 3~19.

Migué, Jean-Luc, Gérard Bélanger, William A. Niskanen, Jean-Luc Migué, and Gérard Bélanger., “Toward a General Theory of Managerial Discretion[with Comment and Reply],” *Public Choice*, 17(1), 1974, pp. 27~47.

Niskanen, William A., “Bureaucrats and politician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3), 1975, pp. 617~643.

Van Dooren, Wouter, Geert Bouckaert, and John Halligan,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1st Edition), London: Routledge, 2010.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 지침(안) 발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3년 12월 22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Incentives)<sup>1)</sup> 지침(guidance)을 발표함<sup>2), 3), 4), 5)</sup>
-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적격생산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적격청정수소 1kg당 최대 3달러를 적용함
  - ‘적격생산시설(qualified clean hydrogen production facility)’이란 2033년 1월 1일 이전 착공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동 시설을 가동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함
  - ‘적격청정수소(qualified clean hydrogen)’란 수소 1kg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이 4kg 이하인 공정에서 생산된 수소를 의미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에 따라 측정함
    -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GREET 모델<sup>6)</sup>에 따라 결정함
  - 수소 1kg당 세액공제액은 온실가스배출량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짐
-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야 함
- 수소생산업체는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를 통해 재생에너지

<표 1> 온실가스배출량별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

온실가스배출량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
4 ~ 2.5 kg CO <sub>2</sub>	\$0.60 / kg of H <sub>2</sub>
2.5 ~ 1.5 kg CO <sub>2</sub>	\$0.75 / kg of H <sub>2</sub>
1.5 ~ 0.45 kg CO <sub>2</sub>	\$1.00 / kg of H <sub>2</sub>
0.45 ~ 0 kg CO <sub>2</sub>	\$3.00 / kg of H <sub>2</sub>

출처: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1) 26 U.S.C. § 45V

2) THE WHITE HOUSE, “Treasury Sets Out Proposed Rules for Transformative Clean Hydrogen Incentives,” 2023. 12. 22., <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clean-energy-updates/2023/12/22/treasury-sets-out-proposed-rules-for-transformative-clean-hydrogen-incentives/>, 검색일자: 2024. 1. 18.

3)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RS Release Guidance on Hydrogen Production Credit to Drive American Innovation and Strengthen Energy Security,” 2023. 12. 2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010>, 검색일자: 2024. 1. 18.

4) IRS, “Treasury, IRS issue guidance on the tax credit for the production of clean hydrogen,” 2023. 12. 22.,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issue-guidance-on-the-tax-credit-for-the-production-of-clean-hydrogen>, 검색일자: 2024. 1. 18.

5) IBFD, “Treasury Department and IRS Propose 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Regulations,” 2023. 12.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8\\_us\\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8_us_2.html), 검색일자: 2024. 1. 18.

6) GREET 모델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모델임(Department of Energy, 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Credit (45V) Resources, 2023. 12. 19., <https://www.energy.gov/articles/clean-hydrogen-production-tax-credit-45v-resources>, 검색일자: 2024. 1. 18.)

지로 생산된 전기의 구매를 입증할 수 있음

## [디지털자산 보고 관련 과도적(transitional) 지침 발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1월 16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 보고 관련 과도적(transitional) 지침을 발표함<sup>7), 8)</sup>

- 재무부와 국세청은 디지털자산 보고에 대한 세부규정을 발표할 계획임

■ 디지털자산 보고 관련 세부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적 지침에 따라, 납세자는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미국은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현금성자산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특정 거래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 사업거래와 관련하여 1만달러<sup>9)</sup>를 초과하여 현금성 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자는 Form 8300<sup>10)</sup>을 작성하여 15일 이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마약, 테러 등을 위한 불법적인 거래를 규제

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함

- 세부지침이 제정되기 전까지 보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성 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영국

## [에너지 저감형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 발표]

■ 영국은 2024년 1월 11일, 에너지 저감형 자재(Energy-Saving Materials)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0%로 경감하는 조치를 발표함<sup>11)</sup>

- 마을회관(village halls)이나 지역 사회를 위한 유사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과 같이 관련 자선(charitable)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건물에 에너지 저감형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될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저감형 자재뿐만 아니라 아래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됨
  - 수열원열펌프(water-source heat pumps)
  - 일부 에너지 저감형 자재와 국가 전력망

7) IRS, "Treasury and IRS announce that businesses do not have to report certain transactions involving digital assets until regulations are issued," 2024. 1. 16.,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and-irs-announce-that-businesses-do-not-have-to-report-certain-transactions-involving-digital-assets-until-regulations-are-issued>, 검색일자: 2024. 1. 18.

8) Bloomberg, "IRS Issues Crypto Reporting Receipts Transitional Guidance(1)," 2024. 1. 1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BNA%200000018d1412d1eaa7fdb5313530001?bna\\_news\\_filter=daily-tax-report](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BNA%200000018d1412d1eaa7fdb5313530001?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4. 1. 18.

9) 2024년 2월 7일 원화 환산 시 약 1,323만 4천원임

10)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11)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Introduces Regulations on VAT Relief for Energy-Saving Materials," 2024. 1.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15\\_u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15_uk_1.html), 검색일자: 2024. 1. 24.

(National Grid)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전기 배터리

- 일부 에너지 저감형 자재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망(grid)으로 내보내지 않고 건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버터(diverter)

- 이번 조치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또한 주거용 숙박시설(residential accommodation)에 설치되는 에너지 저감형 자재의 경우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이후에는 5%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로 환원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단계적 조정, 부유세의 무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김

- (횡재세) 횡재세(windfall tax)를 2024년까지 연장함
  - 스페인은 2022년 12월, 에너지회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임시 횡재세를 제정함
  - 에너지회사의 경우 순매출액의 1.2%, 금융기관의 경우 순이자소득 및 순수수료의 4.8%를 횡재세로 부과함
- (소득세)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개인의 주택 건설작업에 대한 공제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함
  - 스페인은 2021년 10월,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개인의 주택 건설작업에 대해 연간 최대 5천유로<sup>13)</sup>의 개인소득세 공제제도를 임시로 도입함
- (부가가치세 및 전기세) 식품 및 에너지 중 특정 필수품목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및 전기세 세율 인하를 2024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함
  -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천연가스의 공급, 수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024년 3월 31일까지 10%로 인상함
  - 기본식품(기존 4% → 0%로 인하)과 오일 및 파스타제품(기존 10% → 5%로 인하)의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21%에서 5%로 인하한 천연가스 및 연탄과 딸감용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의 공급·수



## 스페인

### [횡재세 연장 등 세금조치 발표]

- 스페인 정부는 2024년 12월, 다양한 세금조치를 발표함<sup>12)</sup>
  -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함임
- 동 발표에는 횡재세의 연장, 소득세의 세제혜택 제도 연장, 부가가치세 및 전기세의 인하된 세율

12) IBFD, "Government Extends Windfall Tax on Energy Companies, Banks to 2024; Announces Progressive Phase-out of VAT Reduced Rates, Other Tax Measures," 2023. 12.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9\\_es\\_1%23tns\\_2023-12-29\\_es\\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9_es_1%23tns_2023-12-29_es_1), 검색일자: 2024. 1. 18.

13) 2024년 2월 7일 원화 환산 시 약 713만 9,650원임

입 등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은 2024년 6월 30일까지 10%로 인상함

- 한시적으로 21%에서 5%로 인하한 전기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024년 한 해 동안 10%로 인상함
- 한시적으로 11%에서 0.5%로 인하한 전기세율은 2024년 3월 31일까지 2.5%, 2024년 6월 30일까지 3.8%로 인상함
- (부유세) 고액자산가에 대한 연대부유세(Solidarity Wealth Tax)를 무기한 연장함
- 부유세는 3백만유로<sup>14)</sup>를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보관기한 개편, 일부 세무행정절차의 디지털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현행 상법 및 국제기본법상 회계문서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나 문서보존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여, 부가가치세법(UStG)상 회계문서 보존기한에 대한 조항도 개정 예정
- 현행 세무자문법(StBerG)상 세무 대리인이 비정기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신고할 경우(일시적 세금신고 지원의 경우) 서면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전면 전자신고로 개정

<자료수집 및 조사: 유승혜 연구원>



## 독일

### [제4차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법률 초안 발표]

- 독일 정부는 2024년 1월 11일 제4차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법률의 초안을 발표하였음<sup>15)</sup>
  - 해당 법안은 불필요한 형식적 관료주의로 인한, 시민 및 기업 등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비용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표된 초안에는 세무행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 룩셈부르크

### [임시 부가가치세율 적용 종료 발표]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 임시 부가가치세율은 2023년까지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고 발표함<sup>16)</sup>
  -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던 임시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이 종료되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6%에서 17%로, 중간세율은 13%에서 14%로, 감면세율은 7%에서 8%로 인상됨<sup>17)</sup>
  -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중간·감

14) 2024년 2월 7일 원화 환산 시 약 42억 8,640만원임

15)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Mehr Entlastung durch das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V," 2024. 1. 11., [https://www.bmj.de/SharedDocs/Meldungen/DE/2024/0111\\_Statement\\_BEGIV.html](https://www.bmj.de/SharedDocs/Meldungen/DE/2024/0111_Statement_BEGIV.html), 검색일자: 2024. 1. 29.

16) Portail de la fiscalité indirecte, "Circulaire N 812-1," <https://pfi.public.lu/content/dam/pfi/pdf/legislation/tva/circulaires/812-1-tva-taux-applicables-partir-01012024.pdf>, 검색일자: 2024. 1. 24.

17) IBFD, "Luxembourg VAT Administration Confirms End of Temporary VAT Rate Reduction," 2024. 1.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2\\_l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2_lu_1.html), 검색일자: 2024. 1. 24.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면세율로 구분됨<sup>18)</sup>

- 표준세율은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는 기본 부가가치세율임
- 중간세율은 알코올 함량이 13% 이하인 포도주,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 미네랄, 광고 인쇄물, 상업용 카탈로그 등에 적용됨
- 감면세율은 난방, 조명 및 모터 연료 공급에 적합한 액화 또는 기체 상태의 가스, 전기 에너지, 난방용 목재, 식물 및 기타 원예 제품 등에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기업가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제 및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함<sup>21)</sup>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간 및 면제 기준 금액 등의 사항에 대해 발표함<sup>22)</sup>
- 근로소득세 및 환경세 주요 변경사항의 최종 수치를 발표함<sup>23)</sup>

### ■ (법인세) 필라 2 최저한세 도입 외에도, 은행의 최소 자본 요건에 관한 사항을 발표함

-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EU 지침(2022/2533)에 따라 다국적 및 국내 그룹의 이익에 대해 15%의 실효세율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도(Wet minimumbelasting 2024)를 도입하기로 함<sup>24)</sup>

- 해당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부터 최초 적용됨

- 은행의 부채는 재무상태표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수 없는데, 해당 비율을 기존 91%에서 89.4%로 1.6%p 인하함

###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의 기본세율 및 과세표



## 네덜란드

### [2024년 세금 변경 사항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3년 12월 20일, 2024년의 가장 중요한 세금 변경 사항이 포함된 보도 자료를 발표함<sup>19)</sup>
  -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자가 거주 주택 귀속 소득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함<sup>20)</sup>

18) IBFD, "7.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lu\\_s\\_7.1.%23evat\\_lu\\_s\\_7.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lu_s_7.1.%23evat_lu_s_7.1.), 검색일자: 2024. 1. 24.  
19)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Tax Figure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1.html), 검색일자: 2024. 1. 24.  
20)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Corporate Tax Change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x Credit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2.html), 검색일자: 2024. 1. 24.  
21)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Deductions and Incentives for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2_nl_3.html), 검색일자: 2024. 1. 24.  
22)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Gift and Inheritance Tax Rates, Exemption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4%23tns\\_2023-12-22\\_nl\\_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4%23tns_2023-12-22_nl_4), 검색일자: 2024. 1. 25.  
23)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Wage Tax, Environmental Tax Figure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5%23tns\\_2023-12-22\\_nl\\_5](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5%23tns_2023-12-22_nl_5), 검색일자: 2024. 1. 24.  
24) 네덜란드 상원, "Wet minimumbelasting 2024," [https://www.eerstekamer.nl/wetsvoorstel/36369\\_wet\\_minimumbelasting\\_2024](https://www.eerstekamer.nl/wetsvoorstel/36369_wet_minimumbelasting_2024), 검색일자: 2024. 2. 16.

<표 2> 2023~2024년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단위: %, 유로)

구분 (나이)	2023년(기존)			2024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일반	~ 37,149유로 이하	36.93	-	~ 75,518유로 이하	36.97	-
	37,149유로 초과 ~	49.50	13,719	75,518유로 초과 ~	49.50	27,919
1946년 이전 출생 퇴직자	~ 38,703유로 이하	19.03	-	~ 40,021유로 이하	19.07	-
	37,149유로 초과 ~	49.50	7,365	40,021유로 초과 ~ 75,518유로 이하	36.97	7,632
1946년 이후 출생 퇴직자	~ 37,149유로 이하	19.03	-	~ 38,098유로 이하	19.07	-
	37,149유로 초과 ~	49.50	7,069	38,098유로 초과 ~ 75,518유로 이하	36.97	7,265
				75,518유로 초과 ~	49.50	21,099

출처: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Corporate Tax Change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x Credit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2%23tns\\_2023-12-22\\_nl\\_2](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2%23tns_2023-12-22_nl_2), 검색일자: 2024. 1. 25.

준 구간을 조정함

- 일반, 1946년 이전 출생 퇴직자, 1946년 이후 출생 퇴직자에 각각 다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됨

■ (자가 거주 주택 귀속 소득)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귀속 소득은 WOZ value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2024년의 경우 이 비율은 7만 5천유로<sup>25)</sup> 이상 131만유로<sup>26)</sup> 이하인 경우 0.35%임

- WOZ value는 부동산가치평가법(Wet Waardering Onroerende Zaken, WOZ)에 따라 평가된 부동산 가치를 의미함
- 귀속 소득이 131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2.35%가 적용됨

■ (기업가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제 및 인센티브)  
기업가 및 자영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투자

공제의 최종 수치를 발표함

- (소규모 투자공제) 기업가 및 자영업자는 회계 연도에 사업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규모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수치를 발표함

<표 3> 네덜란드 소규모 투자공제 (kleinschaligheidsinvesteringsaftrek)

연간 총투자액	공제액
~ 2,800유로 이하	-
2,800유로 초과 ~ 67,765유로 이하	투자 소득의 28%
67,765유로 초과 ~ 129,194유로 이하	19,535유로
129,194유로 초과 ~ 387,580유로 이하	19,535 ~ 129,194유로 초과 투자 소득의 7.56%
387,580유로 초과	0

출처: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Deductions and Incentives for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3%23tns\\_2023-12-22\\_nl\\_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3%23tns_2023-12-22_nl_3), 검색일자: 2024. 1. 25.

25)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90만원임

26)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억 220만원임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환경투자 공제) 최소 2,500유로<sup>27)</sup> 이상을 환경 보호를 위한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최대 5천 만유로<sup>28)</sup>의 투자 금액을 한도로 환경투자 소득공제(milieu-investeringsaftrek)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유형에 따라 45%, 36% 또는 27%의 공제율이 적용됨
- (에너지투자 공제) 최소 2,500유로<sup>29)</sup> 이상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최대 1억 4,900만 유로<sup>30)</sup>의 투자 금액을 한도로 에너지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공제) 혁신적인 IT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연구 개발에 연간 500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기준 1만 4,202유로<sup>31)</sup>에서 1만 5,551유로<sup>32)</sup>로 1,349유로<sup>33)</sup> 인상함
- (상속세 및 증여세) 확정된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면제 기준 금액을 발표하였으며,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나 취득자산 가액 기준 및 면제 기준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완화됨
  - (세율) 취득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2024년에

<표 4> 네덜란드 상속세 및 증여세율

(단위: %)

취득자산 가액	Group I (파트너/자녀)	Group IA (손자녀)	Group II (기타)
~ 152,368유로 이하	10	18	30
152,368유로 초과 ~	20	36	40

출처: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2024 Gift and Inheritance Tax Rates, Exemptions," 2023. 1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4%23tns\\_2023-12-22\\_nl\\_4](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22_nl_4%23tns_2023-12-22_nl_4), 검색일자: 2024. 1. 25.

-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발표함
- 네덜란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로 누진과세되며, 각각의 관계 및 자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됨
  - (면제 기준 금액)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부과 대상별도 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으며, 면제 기준액은 다음과 같음
    -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6,633유로<sup>34)</sup>가 공제 가능하고 18~40세 사이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에게 3만 1,813<sup>35)</sup>유로가 공제 가능하며, 기타 일반 증여의 경우 2,658<sup>36)</sup>유로를 공제 할 수 있음
    - 파트너에게 상속하는 경우 79만 5,156유로<sup>37)</sup>,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2만 5,187유로<sup>38)</sup> 독립

27)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3만원임  
 28)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26억 300만원임  
 29)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3만원임  
 30)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64억 2,995만원임  
 31)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64만원임  
 32)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60만원임  
 33)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6만원임  
 34)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64만원임  
 35)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24만원임  
 36)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6만원임  
 37)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5,585만원임  
 38)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61만원임

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아동 등의 경우 7만 5,546유로,<sup>39)</sup> 부모는 5만 9,643유로<sup>40)</sup> 공제 가능하며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2,658유로<sup>41)</sup> 공제 가능함

■ (근로소득세 및 환경세) 고용 비용 규정 및 회사 차량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항공세 및 CO<sub>2</sub> 세금 등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함

- (고용 비용 규정) 2024년 업무 관련 비용 제도 (werkkostenregeling)<sup>42)</sup>에 따라 적용되는 비과세 비용 보상 비율을 40만유로<sup>43)</sup>까지는 기존 3%에서 1.1%p 감소된 1.9%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18%를 적용하기로 발표함
- (회사 차량) 회사차량에 관한 현물 혜택의 최종 수치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의 경우 현물 보상으로 간주되어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 과세되는데, 이때 과세기준은 일반차량의 경우 카탈로그 가격의 22%이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첫

3만유로<sup>44)</sup>까지는 카탈로그 가격의 16%임

- (항공세) 2024년부터 네덜란드 공항은 항공 운송회사로부터 승객 1인당 기존 26.43유로<sup>45)</sup>에서 2.62유로 인상된 29.05유로<sup>46)</sup>의 항공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만 2세 미만의 어린이와 네덜란드 공항에서 중간 기착하는 환승 승객에게는 면제됨
- (CO<sub>2</sub> 세금) CO<sub>2</sub> 환산 배출량이 면제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CO<sub>2</sub> 환산 톤당 기존 55.94유로<sup>47)</sup>에서 18.23유로 인상된 74.17유로<sup>48)</sup>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EU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해당 세금이 면제됨

### [외국인 근로자 세금혜택제도에 대한 급여세 개정 법령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2월 29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30% 롤링 제도에 관한 급여세 개정 법령을 발표함<sup>49)</sup>

- 30% 롤링 제도는 네덜란드에서 근무하는 외

39)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81만원임

40)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69만원임

41)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6만원임

42) 업무 관련 비용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총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과세 고용 비용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43)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8,095만원임

44)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58만원임

45) 2024년 2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7,912원임

46)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2,178원임

47) 2024년 2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만 242원임

48) 2024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만 7,699원임

49) News IBFD, "State Secretary for Finance Clarifies Wage Tax Corrections for Expat Regime," 2023. 12.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9\\_nl\\_3.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12-29_nl_3.html), 검색일자: 2024. 1. 24.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국민 근로자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는 급여의 3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네덜란드에서 임시로 근무하는 기업 또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외국인 임원 및 기타 종업원과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는 네덜란드 국내에서 거의 구할 수 없는 특정 노하우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의 최대 30%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외국인의 연 환산 급여가 최소 과세 대상 급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임
  - 대학 및 지식 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자 및 연구원은 이 급여 요건에서 면제됨

■ 개정되는 내용은 30% 롤링 적용에 대한 판결 결정의 수정 또는 철회에 대한 조항이며, 변경된 조항에 따라 조사관의 제도 적용에 대한 결정 및 검토 기간 동안 30% 롤링에 관한 설명 (clarification)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30% 롤링을 적용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조사관에게 30% 롤링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기존에는 결정에 따른 사항을 급여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다수 있었음<sup>50)</sup>
-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개정 기간 중에는 근로

소득세 신고 시 30% 롤링을 적용할 수 있음

- 신청한 기간 동안 롤링이 최종 승인되지 않은 경우, 세금 신고 기한이 만료된 후 제출된 근로소득세 신고서에 대해서는 정정 메시지를 제출하여 정정하여야 함
- 고용주는 조사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30% 롤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세금 신고 기간이 만료된 기간, 특히 결정에 따라 30% 롤링 자격이 있는 기간의 근로소득세 신고서에 대해서는 정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전에 발표된 결정이 새로운 결정으로 수정된 경우, 신고 기간이 만료된 임금 기간에 대해서도 정정 메시지를 사용하여 해당 임금 기간에 30% 롤링을 적용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 포르투갈

### [단기 임대 목적 부동산 특별부담금 부과 조례 마련]

- 포르투갈 국세청은 2023년 12월 29일 단기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부동산에 적용되는 특별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조례 Portaria n.º 455-E/2023를 게시함<sup>51, 52)</sup>

50) 네덜란드 정부, "Staatscourant van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stcrt-2023-32721.html>, 검색일자: 2024. 2. 16.

51) IBFD, "Portugal Announces Regulations for Calculation of Extraordinary Contribution for Properties Used in Short-term Rental Business," 2024. 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1-10\\_pt\\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1-10_pt_1), 검색일자: 2024. 1. 25.

52) Portaria n.º 455-E/2023, <https://files.diariodarepublica.pt/1s/2023/12/25004/0006600075.pdf>, 검색일자: 2024. 1. 25.

- 특별부담금은 해당 부동산의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에 대해 15%의 요율로 적용되며,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따라 과세 표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일수록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이 증가함
  - 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 계산을 위한 계수는 조례 내에서 별도로 규정함
- 단기 임대사업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 성격을 지님
  - 부동산이 단기 임대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거주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 늘어나, 거주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임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 그리스

### [기후회복세(Climature Resilience Tax) 부과 시행]

- 그리스 국세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호텔 등 객실 이용에 대한 기후회복세(Climature Resilience Tax) 부과를 발표함<sup>53)</sup>
  - 그리스 정부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호텔 객실 등의 사용 관련 기후회복세 (Climate Resilience Tax) 부과를 발표함

<표 5> 그리스 기후회복세 부과액

일자	시설	세금	
3~10월 일일 기후 회복세 (Climate Resilience Tax per day)	호텔	1~2성급	EUR 1.50 (약 2,100원)
		3성급	EUR 3.00 (약 4,300원)
		4성급	EUR 7.00 (약 10,000원)
		5성급	EUR 10.00 (약 14,300원)
	단기 임대를 위한 객실이나 아파트 (Furnished rooms or apartments for short-term lease)	EUR 1.50 (약 2,100원)	
	단기 임대 부동산 (Properties offered through short-term leasing)	EUR 1.50 (약 2,100원) (80m <sup>2</sup> 초과 EUR 10.00, 약 14,300원)	
11~2월 일일 기후 회복세 (Climate Resilience Tax per day)	호텔	1~2성급	EUR 0.50 (약 720원)
		3성급	EUR 1.50 (약 2,100원)
		4성급	EUR 3.00 (약 4,300원)
		5성급	EUR 4.00 (약 5,700원)
	단기 임대를 위한 객실이나 아파트 (Furnished rooms or apartments for short-term lease)	EUR 0.50 (약 720원)	
	단기 임대 부동산 (Properties offered through short-term leasing)	EUR 0.50 (약 720원) (80m <sup>2</sup> 초과 EUR 4.00, 약 5,700원)	

주: 2024년 2월 1일자 환율 기준

출처: IBFD, "Greece Establishes Rates for Levy of Climate Resilience Tax on Rooms, Apartments," 2024. 1.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8\\_g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8_gr_1.html), 검색일자: 2024. 1.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3) IBFD, "Greece Establishes Rates for Levy of Climate Resilience Tax on Rooms, Apartments," 2024. 1.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8\\_g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08_gr_1.html), 검색일자: 2024. 1. 17.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숙박시설을 이용한 객실 소비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되는 해당 세금은 각 숙박시설의 공식적인 분류 등급에 따라 일일 사용 기준으로, 기간별로 다르게 부과될 예정임
  - 이는 숙박세(Accommodaion tax)를 한 단계 강화한 세금<sup>54)</sup>으로 관광객이 머무는 숙소에서 직접 지불하여야 함
  - 단, 무료 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후회복세 면제

<자료수집 및 조사 : 정효림 세무사>

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3월 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모하고 다자조약의 최종안을 마무리할 것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함<sup>56)</sup>

- 디지털서비스세 및 기타 관련 조치를 포함하여 필라1 Amount A와 관련한 이견을 해결하고자 함
- 필라2와 관련하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세 번째 행정지침을 발간하였고,<sup>57)</sup> 행정지침의 내용은 2024년에 발간될 개정 주석서에 반영될 예정임<sup>58)</sup>
  - 행정지침은 경과 CbCR 세이프하버(Transitional Country-by-Country Reporting Safe Harbour), GloBE 규칙의 적용 및 혼합 피지배외국법인(CFC) 조세의 배분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OECD

### [필라1 Amount A 관련 성명서 발표 및 필라2 행정지침 발간]

- OECD는 2023년 12월 18일, 필라1 Amount A의 다자조약 최종안 기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라2와 관련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발간함<sup>55)</sup>
  - 필라1 Amount A와 관련하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4년 6월 말까지 서명

### [글로벌최저한세 및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보고서 발간]

- OECD는 2024년 1월 9일, 글로벌최저한세 및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관련한 보고서(working paper)를 발

54) 기존 숙박세에서 부과되지 않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는 기후회복세 부과 대상이 됨

55) EY, "OECD/G20 Inclusive Framework releases additional Administrative Guidance on Pillar Two GloBE Rules and update on Pillar One Amount A timeline," 2023. 12. 22.,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g20-inclusive-framework-releases-additional-administrative-0](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g20-inclusive-framework-releases-additional-administrative-0), 검색일자: 2024. 1. 24.

56) OECD, "Update to Pillar One timeline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https://www.oecd.org/tax/beps/update-pillar-one-timeline-beps-inclusive-framework-december-2023.pdf>, 검색일자: 2024. 1. 24.

57) 필라2 행정지침은 2023년 2월 및 7월에 발간된 바 있음

58)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Pillar Two), December 2023," <https://www.oecd.org/tax/beps/administrative-guidance-global-anti-base-erosion-rules-pillar-two-december-2023.pdf>, 검색일자: 2024. 1. 24.

간함<sup>59)</sup>

-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통합 데이터를 기초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에 글로벌최저한세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보고서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약 80%를 경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고, 이는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비율이 전 세계 이익의 36%에서 약 7%로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는 네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이익 이전(profit shifting)에 대한 유인을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이 이익 이전을 줄이고 과세를 강화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저율과세되는 이익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 법인세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됨
  - 투자 및 다국적기업 그룹 활동의 배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할국 간 세율 차이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59) OECD, "The Global Minimum Tax and the taxation of MNE profit," <https://www.oecd.org/publications/the-global-minimum-tax-and-the-taxation-of-mne-profit-9a815d6b-en.htm>, 검색일자: 2024. 1. 24.

##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유로그룹 및 EU 경제재정이사회에서 ‘2024년 유로지역 경제정책 권고’에 대해 논의 및 승인 (2024. 1. 15., 2024. 1. 16.)<sup>1)</sup>

- (개요) 유로그룹은 1월 15일 회의에서, EU 경제재정이사회는 1월 16일 회의에서 2024년 유로지역 경제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논의 후 합의함
- (주요 권고 사항) 재정정책 조율, 높은 수준의 공공투자 유지, 구매력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 개선 지원, EU 단일 시장 강화, 거시 금융 안정성 유지 등 다섯 가지 우선순위 정책 분야에 대한 유로지역 회원국의 조치를 권고
  - 채무를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조율되고 신중한(coordinated and prudent) 재정정책을 채택해야 함
  - 전반적으로 긴축적(restrictive) 재정기조를 달성하여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을 고려해 정책의 기민한 대응을 유지

- 2024년에 에너지 관련 비상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절감 예산을 활용해 재정적자를 축소
- 지속가능한 성장과 유로지역의 회복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공공투자 및 개혁을 수반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중기의 건전 재정을 달성하고 채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재정 전략을 개발
- 공공지출의 효율성 및 질을 제고하고, 연금, 보건,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재정 전략에 포함
-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사회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높은 수준의 공공 투자를 유지
  -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sup>2)</sup>을 이행하고 EU 결속 정책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
  - 인플레이션과 경쟁력에 미치는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실질 소득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구매력 손실을 완화하는 임금 개선을 지원
  - 이 외에도 직무 재교육 및 직무 역량 향상 교육 촉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행,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근로 조건 개선 장려, 제3국 근로자의 합법적 이민 관리 촉진 등을 권고
- EU 자본시장동맹을 강화하여 혁신 기업과

1) European Council and Council of the EU, “Eurogroup, 15 January 20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group/2024/01/15/>, 검색일자: 2024. 1. 25.;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16 January 20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24/01/16/>, 검색일자: 2024. 1. 25.;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raft COUNCIL RECOMMENDATION on the economic policy of the euro area,” 2024. 1. 9.,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025-2024-INIT/en/pdf>, 검색일자: 2024. 1. 25.

2) EU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2026년까지 회복 및 복원 프로그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통해 회원국이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에서 제시한 개혁 및 투자 패키지에 자금을 지원함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개선

- 또한 주요 전략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이 단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하지 않고 유로 지역 경쟁력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sup>3)</sup>을 강화하도록 보장
-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유로화 작업을 추진
- 거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분절화<sup>4)</sup> 리스크를 방지
  -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 등 제한적인 금융 여건 관련 리스크를 감시하고 은행과 비은행 금융 중개 부문의 추이를 관찰해 시스템 리스크와 부정적 파급 효과를 방지
- (향후 일정) 2024년 3월에 EU 정상회의 승인 이후 권고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

- EU 통계청, 2023년 3분기 재정통계(재정수지·채무) 발표(2024. 1. 22.)<sup>5)</sup>
  - (재정수지) 2023년 3분기 유로지역<sup>6)</sup>과 EU 27개

국<sup>7)</sup>의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적자는 둘다 GDP 대비 2.8%로 이전 분기 3.0%에 비해 각각 0.2%p 감소(<표 1> 참조)

- 높은 에너지 가격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재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sup>8)</sup>
- 2023년 3분기 유로지역의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46.5%로 2분기 46.1%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총지출 비율은 전 분기 49.1%에 비해 0.2%p 증가한 49.3%
- EU에서는 2023년 3분기 정부 총수입은 GDP 대비 46.0%로 전 분기 45.7%에 비해 0.3%p 증가하였고, 총지출 비율은 전 분기 48.7%에서 0.1%p 증가한 48.8%
- (정부채무)<sup>9), 10)</sup> 2023년 3분기 말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유로지역에서 전 분기 대비 0.4%p 감소한 89.9%, EU는 82.6%로 전 분기 대비 0.4%p 감소(<표 2> 참조)
  - (변동) 2023년 3분기에 전 분기와 비교하여 9개 회원국에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증

3) Open strategic autonomy: 다자주의 개방 경제를 추구하면서 필요시 EU 회원국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

4) 유로지역 내 중심국가와 주변국 간 구조적 차이로 조달 비용 등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5)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8% of GDP in the euro area and in the EU,” 2024. 1. 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8350825/2-22012024-BP-EN.pdf/78424a2d-a14d-19f7-e221-7645854850f0?version=1.0&t=1705697474904>, 검색일자: 2024. 1. 23.;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89.9% of GDP in euro area,” 2024. 1. 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8357971/2-22012024-AP-EN.pdf/8b631960-6df6-b7b6-49a0-031dca1479c6?version=1.0&t=1705739322231>, 검색일자: 2024. 1. 23.

6) 유로지역은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로 2024년 1월 기준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임

7) EU 회원국은 유로지역 20개국에서 7개국(덴마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체코, 폴란드, 헝가리)을 더한 27개국으로 구성

8) 2020년 1분기 이후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고, 2020~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과 2023년 3분기 동안 사회·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들의 영향은 현저히 낮아졌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이 정부 수입과 지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침

9) 일반정부 채무 범위는 분기 말 일반정부 총채무(명목기준)로 ESA 2010(유럽 국가 및 지역 계정 시스템, EU 회계 프레임워크)에 정의된 통화 및 예금(AF.2), 채무증권(AF.3) 및 대출(AF.4)로 구성

10) GDP 대비 채무 비율에서 GDP는 지난 네 분기 동안의 분기별 GDP의 합(최근 1년 동안의 GDP)을 사용하며 분기별 채무 통계는 연간 채무 수치와 발표일이 같은 경우 동일하나, 발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및 연간 데이터 간의 차이가 발생할

<표 1>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3년 3분기 계절조정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3분기	2023년 2분기 (잠정치)	2023년 3분기 (잠정치)	전 분기 대비 (%p)
유로지역(20개국)				
재정수지	-4.0	-3.0	-2.8	0.2
총수입	46.9	46.1	46.5	0.4
총지출	51.0	49.1	49.3	0.2
EU				
재정수지	-3.8	-3.0	-2.8	0.2
총수입	46.2	45.7	46.0	0.3
총지출	49.9	48.7	48.8	0.1
벨기에	-4.3	-4.0	-4.1	-0.1
불가리아	-6.6	-4.4	-6.6	-2.3
체코	-4.3	-2.9	-3.1	-0.1
덴마크	3.1	2.8	2.7	-0.2
독일	-2.6	-1.9	-0.9	1.0
에스토니아	-1.1	-0.7	-3.2	-2.5
아일랜드	2.5	2.2	1.6	-0.6
그리스	:	:	:	:
스페인	-4.9	-4.9	-4.3	0.6
프랑스	-4.8	-4.4	-4.8	-0.3
크로아티아	-0.3	0.1	2.2	2.1
이탈리아	:	:	:	:
사이프러스	:	:	:	:
라트비아	-3.7	-0.2	-5.0	-4.8
리투아니아	0.4	0.3	0.8	0.4
룩셈부르크	-0.7	-0.2	0.5	0.7
헝가리	-7.6	-6.1	-5.7	0.4
몰타	-5.1	-2.9	-2.2	0.7
네덜란드	-1.2	0.3	0.4	0.1
오스트리아	-5.2	-1.7	-3.9	-2.2
폴란드	-3.6	-4.7	-5.5	-0.8
포르투갈	1.4	2.2	2.5	0.3
루마니아	-5.7	-7.6	-4.2	3.4
슬로베니아	-3.3	-3.0	-4.0	-1.1
슬로바키아	-1.4	-5.1	-7.0	-1.9
핀란드	-0.2	-2.9	-2.1	0.8
스웨덴	0.8	-0.8	-0.3	0.5

주: 1. ':'는 비공개 혹은 유럽통계청의 추정치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임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8% of GDP in the euro area and in the EU," 2024. 1. 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8350825/2-22012024-BP-EN.pdf/78424a2d-a14d-19f7-e221-7645854850f0?version=1.0&t=1705697474904>, 검색일자: 2024. 1. 23.

&lt;표 2&gt;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3년 3분기 정부채무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3분기	2023년 2분기 (잠정치)	2023년 3분기 (잠정치)	전년 동기 대비	
				(%p)	전 분기 대비 (%p)
유로지역 (20개국)	92.2	90.3	89.9	-2.3	-0.4
EU	84.6	83.0	82.6	-2.0	-0.4
벨기에	105.6	105.9	108.0	2.5	2.1
불가리아	23.1	21.5	21.0	-2.1	-0.5
체코	45.2	44.3	44.5	-0.7	0.2
덴마크	30.4	30.1	30.1	-0.3	-0.1
독일	66.8	64.7	64.8	-2.0	0.1
에스토니아	15.9	18.5	18.2	2.3	-0.3
아일랜드	48.5	43.2	43.6	-4.9	0.4
그리스	177.5	167.1	165.5	-12.0	-1.6
스페인	114.0	111.2	109.8	-4.2	-1.4
프랑스	113.5	111.8	111.9	-1.7	0.1
크로아티아	69.8	66.5	64.4	-5.5	-2.2
이탈리아	143.1	142.5	140.6	-2.4	-1.8
사이프러스	89.7	85.1	79.4	-10.3	-5.6
라트비아	40.1	39.5	41.4	1.3	1.9
리투아니아	37.0	38.1	37.4	0.4	-0.7
룩셈부르크	24.7	28.2	25.7	1.0	-2.6
헝가리	75.5	75.2	75.0	-0.5	-0.2
몰타	51.5	49.6	49.3	-2.1	-0.3
네덜란드	48.2	46.9	45.9	-2.3	-1.0
오스트리아	81.3	78.5	78.2	-3.1	-0.3
폴란드	50.3	48.3	48.7	-1.6	0.3
포르투갈	118.4	110.0	107.5	-10.9	-2.5
루마니아	47.9	48.2	48.9	1.0	0.8
슬로베니아	74.4	70.4	71.4	-3.0	1.0
슬로바키아	57.5	59.6	58.6	1.0	-1.0
핀란드	71.9	74.5	73.8	2.0	-0.7
스웨덴	33.7	30.4	29.7	-4.0	-0.8

주: EA(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출처: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89.9% of GDP in euro area," 2024. 1. 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8357971/2-22012024-AP-EN.pdf/8b631960-6df6-b7b6-49a0-031dca1479c6?version=1.0&t=1705739322231>, 검색일자: 2024. 1. 23.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가하였고, 18개 회원국에서는 감소

- 채무 비율이 많이 증가한 국가는 벨기에<sup>11)</sup> (+2.1%p), 라트비아(+1.9%p), 슬로베니아(+1.0%p), 루마니아(+0.8%p)
- 채무 비율이 많이 감소한 회원국은 사이프러스(-5.6%p), 룩셈부르크(-2.6%p), 포르투갈<sup>12)</sup> (-2.5%p), 크로아티아(-2.2%p), 이탈리아(-1.8%p), 그리스(-1.6%p), 스페인(-1.4%p), 네덜란드 및 슬로바키아(-1.0%p)

였으며, 정부 및 민간 지출이 성장을 견인함

- 한편 유로지역의 경제는 소비자 심리 약화, 높은 에너지 가격, 금리에 민감한 제조업과 기업 투자의 약세가 반영되어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됨
-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와 일자리 감소, 실업률의 소폭 상승, 노동 공급 증가 등 노동시장 경색의 완화가 반영되어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함
-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2023년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기업 및 주택 투자 약화 등 수요가 냉각됨
- 미국을 포함하여 선진국 경제는 2023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중립적 재정기조로 추정됨
- 2024년에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적 재정기조가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 3.1%,



IMF

###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2024. 1. 30.)<sup>13)</sup>

- (동향) 세계 경제는 COVID-19 팬데믹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생활비 위기(cost-of-living crisis)로부터 높은 회복력을 보임
- 2023년 하반기 미국과 주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

11)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벨기에 일반정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기초재정수지 적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공공부문 임금과 사회복지의 물가 연동, 이자지급액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았고, 2024년에는 에너지 대책의 종료와 기대치 이상의 법인세 수익으로 정부 적자가 GDP 대비 4.9%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함(2023년 4.9%, 2025년 5.0%)(EU 집행위, “Economic forecast for Belgium,” 2023. 11. 15. Last update,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economies/belgium/economic-forecast-belgium\\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economies/belgium/economic-forecast-belgium_en), 검색일자: 2024. 1. 31.). 벨기에 채무 기관(Belgian Debt Agency)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연방정부 채무는 약 5,132억유로로 전월 대비 187.3억유로 증가하였고, 주식 및 채권 등을 제외한 순기준 연방정부 채무는 102.8억유로 증가한 약 4,814억유로로 이러한 채무 증가의 상당 부분은 9월 4일 1년 만기 국채 발행으로 인함(Belgian Debt Agency, “Federal Government Debt at the end of September 2023,” 2023. 10. 13., <https://news.belgium.be/en/federal-government-debt-end-september-2023>, 검색일자: 2024. 1. 31.)

12) EU 집행위원회는 포르투갈에 대해 2023년 높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경제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견조한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 등으로 2023년 정부 수입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EU 집행위, “Economic forecast for Portugal,” 2023. 11. 15., Last update,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economies/belgium/economic-forecast-belgium\\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economies/belgium/economic-forecast-belgium_en), 검색일자: 2024. 1. 31.)

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4, 2024. 1. 3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01/30/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24?cid=em-COM-123-47819>, 검색일자: 2024. 1. 31.

2025년 3.2%로 회복력이 있지만 느린(resilient but slow) 경제 성장을 전망

- 2024~2025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0~2019년의 평균 성장률인 3.8%보다는 낮은 수치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금리 인상, 높은 국가 채무와 재정지원 철폐, 낮은 생산성 등에 기인함

- 다만 2024년 경제성장률은 미국 및 여러 국가의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2023년 10월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됨

- 선진국은 2024년에 성장률이 소폭 하락 후 2025년에 상승세를 보이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2024~2025년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1.5%, 2025년 1.8% 전망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4.1%, 2024년 4.1%, 2025년 4.2% 전망

- (미국) 긴축 통화정책의 지연 효과와 점진적인 재정 긴축, 노동시장 약화(softening) 등에 기인하여 2023년 2.5%에서 2024년 2.1%, 2025년 1.7%로 성장세 둔화

- (유로존) 유로존은 2023년 0.5%의 저성장에서 2024년 0.9%, 2025년 1.7%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와 물가상승률 하락,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해 가계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성장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영국) 경제성장률은 2023년 0.5%에서 2024년 0.6%로 소폭 상승한 후,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실질 소득이 회복되면서 2025년에 1.6%로 성장 전망

- (일본) 엔화 약세와 이연수요(pent-up demand) 등 2023년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던 일회성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경제성장률이 2023년 1.9%에서 2024년 0.9%, 2025년 0.8%로 둔화될 전망

- (중국) 2023년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부의 지출 증가를 반영하여 지난 10월 전망 대비 0.4%p 상향 조정된 2024년 4.6%, 2025년 4.1%로 성장 전망

• (인플레이션 전망) 세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23년 6.8%에서 2024년 5.8%, 2025년 4.4%로 꾸준한 하락세 전망

- 물가상승률 감소의 동인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노동시장 약화(softening),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이효과가 반영됨

- 빠른 디스인플레이션은 금융 여건의 추가 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재정 정책 확대(Looser)가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으나 추후 조정비용이 더 커질 위험이 있음

- (위험) 공급 충격이 완화되고 경착륙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세계 전망에 대한 상하방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상방위험) ① 급격한 디스인플레이션, ② 주요국의 재정지원 철폐 지연, ③ 중국의 빠른 회복, 인공지능 및 공급 측면의 개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긍정적일 수 있음

- (하방위험) ① 지정학적, 기후 충격으로 인한

<표 3> 2024년 1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단위: %)

구분	추정		전망		2023년 10월 전망 대비 <sup>1)</sup>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세계 경제	3.5	3.1	3.1	3.2	0.2	0.0
선진국	2.6	1.6	1.5	1.8	0.1	0.0
미국	1.9	2.5	2.1	1.7	0.6	-0.1
유로지역	3.4	0.5	0.9	1.7	-0.3	-0.1
독일	1.8	-0.3	0.5	1.6	-0.4	-0.4
프랑스	2.5	0.8	1.0	1.7	-0.3	-0.1
이탈리아	3.7	0.7	0.7	1.1	0.0	0.1
스페인	5.8	2.4	1.5	2.1	-0.2	0.0
일본	1.0	1.9	0.9	0.8	-0.1	0.2
영국	4.3	0.5	0.6	1.6	0.0	-0.4
캐나다	3.8	1.1	1.4	2.3	-0.2	-0.1
그 외 선진국 <sup>2)</sup>	2.7	1.7	2.1	2.5	-0.1	0.2
한국	2.6	1.4	2.3	2.3	0.1	0.0
신흥개도국	4.1	4.1	4.1	4.2	0.1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4.5	5.4	5.2	4.8	0.4	-0.1
중국	3.0	5.2	4.6	4.1	0.4	0.0
인도 <sup>3)</sup>	7.2	6.7	6.5	6.5	0.2	0.2
유럽 신흥개도국	1.2	2.7	2.8	2.5	0.6	0.0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4.2	2.5	1.9	2.5	-0.4	0.1
중동 및 중앙 아시아	5.5	2.0	2.9	4.2	-0.5	0.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0	3.3	3.8	4.1	-0.2	0.0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 <sup>4)</sup>	5.2	0.4	3.3	3.6	-0.2	-0.1
선진국	6.1	0.3	2.6	3.2	-0.4	-0.1
신흥개도국	3.7	0.6	4.5	4.4	0.2	0.0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sup>5)</sup>	39.2	-16.0	-2.3	-4.8	-1.6	0.1
비연료	7.9	-6.1	-0.9	-0.4	1.8	-0.3
세계소비자물가 <sup>6)</sup>	8.7	6.8	5.8	4.4	0.0	-0.2
선진국 <sup>7)</sup>	7.3	4.6	2.6	2.0	-0.4	-0.2
신흥개도국	9.8	8.4	8.1	6.0	0.3	-0.2

주: 1) 현재 및 2023년 10월 WEO 전망에 대한 반올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3년 10월 WEO 전망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장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2-2023년 회계연도는 2022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을 기준으로 2024년 5.7%, 2025년 6.8%

4)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단순 평균

5) UK Brent, Dubai Fateh 및 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 선물시장(2023. 11. 29. 기준) 기준 배럴당 미국달러 평균 유가는 2024년 \$79.10, 2025년 \$75.31

6) 베네수엘라 제외

7) 물가상승률: 유로존 2024년 2.8%, 2025년 2.1%, 일본 2024년 2.7%, 2025년 2.0%, 미국 2024년 2.2%, 2025년 1.9%

1. 실질실효율은 2023. 10. 30.~2023. 11. 27.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

출처: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4," January, Table 1., p. 6(한국수치는 p. 11 Annex 참고)

원자재 가격 급등, ② 근원 물가상승 지속으로 인한 긴축 통화기조 요구, ③ 중국의 성장 둔화, ④ 재정건전화로 인한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등이 예상보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책 권고)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적기에 도달하는 것이 과제이며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과 채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목표를 세심하게 고려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강화와 중기 성장, 채무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효율적인 다자간 협력이 필요



OECD

■ OECD, 2023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 (2024. 1. 18.)<sup>14)</sup>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3분기에 각각 70.1%와 73.8%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각각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OECD 38개 국가 중 9개국<sup>15)</sup>에서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두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OECD 대부분(2/3) 국가의 고용률이 70% 이상으로 집계됨

<표 4>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19년	2022년				2023년		
				Q4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66.0	67.7	69.4	68.9	69.4	69.5	69.6	69.9	70.1	70.1	
G7	69.7	71.1	72.5	72.3	72.5	72.6	72.7	72.9	73.1	73.1	
유럽연합	67.1	68.3	69.8	68.0	69.8	69.8	70.1	70.2	70.5	70.4	
유로지역	66.6	67.8	69.4	68.6	69.5	69.4	69.5	69.9	70.3	70.0	
호주	72.7	74.9	77.3	74.4	77.1	77.6	77.5	77.5	77.5	77.6	
캐나다	70.1	73.5	75.6	74.6	75.8	75.5	75.8	76.2	76.0	75.6	
프랑스	66.1	67.3	68.1	66.5	68.0	68.4	68.3	68.5	68.5	68.4	
독일 <sup>1)</sup>	76.2	75.6	76.9	75.8	76.9	76.9	77.2	77.3	77.5	77.4	
이탈리아	57.5	58.3	60.2	59.0	60.2	60.1	60.7	61.0	61.3	61.4	
일본	77.7	77.9	78.5	78.1	78.6	78.6	78.6	78.6	78.9	79.0	
한국	65.9	66.5	68.5	67.0	68.5	68.7	68.7	68.8	69.2	69.3	
스페인	61.0	62.7	64.4	63.4	64.6	64.5	64.4	64.7	65.4	65.7	
영국 <sup>2)</sup>	75.4	75.1	75.6	76.5	75.5	75.5	75.6	75.9	(b) <sup>3)</sup> 75.7	75.7	
미국	67.1	69.4	71.3	71.7	71.3	71.4	71.4	71.8	72.0	72.0	

주: 1) 독일은 노동력조사(LFS)를 포함한 새로운 독일 통합 가구조사 시스템 도입 문제로, 2020년 1~4분기 데이터는 LFS micro-data가 아닌 추가 기타 통합 가구 조사 데이터임

2) 영국의 경우 2023년 5~7월 노동력조사(LFS)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3년 3분기 데이터는 영국통계청(ONS)의 TLFS(Transformed Labour Force Survey) 추정치

3) (b)는 시계열 중단(break)을 의미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News Release: 3rd Quarter 2023, Table 1 재구성

14) OECD,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News Release: 3rd Quarter 2023," 2023. 1. 18., <https://www.oecd.org/sdd/labour-stats/labour-market-situation-oecd-updated-january-2024.htm>, 검색일자: 2024. 1. 23.

15)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한편 전 분기 대비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국가는 코스타리카(59.3% → 58.2%), 아이슬란드(84.5% → 83.6%), 핀란드(74.7% → 73.9%) 순이며, 튀르키예는 53.9%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
-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2023년 11월에 4.8%로 집계되었으며, 2001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을 9개월 연속 유지
-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2023년 11월 실업률은 각각 5.9%, 6.4%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



### 미국

#### [예산·결산 등]

- 미 의회, 2024회계연도 3차 임시 세출예산안 (Continuing Resolution; H.R. 2872; P.L. 118-35)

가결(2024. 1. 18.)<sup>16)</sup>

- (배경) 2024회계연도 1차 임시 세출예산에 이어 2차 임시 세출예산의 만료시한이 도래하였으나 총 12개 세출 분야에 대한 정규예산이 모두 통과되지 못한 상황
- 2차 임시 세출예산의 만료 시한은 두 시기 (two-tiered)로 나누어 (2024년 1월 19일, 2024년 2월 2일)까지로 규정된 바 있음
- (예산 규모)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로 진행
- (만료 시한) 1월 19일에 만료된 4개의 분야의 시한을 3월 1일로 연기, 2월 2일에 만료되는 분야의 시한은 3월 8일로 연기
- (정규예산안 심의 진행 상황) 2024회계연도 정규예산은 현재(2024. 1. 29. 기준) 8개 분야만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상원은 1개 분야<sup>18)</sup>만 통과된 상태
-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장(Mike Johnson)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Chuck Schumer)는 1월 초에 정규 재량지출 예산안 상한(1.59조

<표 5> 미국 2024회계연도 임시 예산(총 3회) 현황

구분	1차 임시 예산 (H.R. 5860)	2차 임시 예산 (H.R. 6363)	3차 임시 예산 (H.R. 2872)
의회 통과일	2023. 9. 30.	2023. 11. 15.	2024. 1. 18.
만료 시한	2023. 11. 17.	2024. 1. 19.(4개 <sup>1)</sup> 분야) 2024. 2. 2.(8개 <sup>2)</sup> 분야)	2024. 3. 1.(4개 <sup>1)</sup> 분야) 2024. 3. 8.(8개 <sup>2)</sup> 분야)

주: 1) 4개 분야: ① 군사시설·보훈, ② 에너지·수자원, ③ 농업 등, ④ 교통·주택/도시 개발

2) 8개 분야: 4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분야(총 12개 분야)

출처: CRFB, "Appropriations Watch: FY 2024,"<sup>17)</sup> 2024. 1. 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9월호·11월호를 참고하여 작성

16)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2872," 2024. 1. 1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01/19/press-release-bill-signed-h-r-2872/>, 검색일자: 2024. 1. 26.

17) CRFB, "Appropriations Watch: FY2024," 2024. 1. 19., <https://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24>, 검색일자: 2024. 1. 26.

18) 상원에서 수정을 거쳐 통과된 분야의 예산은 '군사시설·보훈' 분야 예산으로써, 하원에서 이를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 효력 발생

달러)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최근 다시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sup>19)</sup>

- (향후 전망) 3차 임시 세출예산안 만료 시한<sup>20)</sup>까지 정규 세출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 섣다운 가능성 존재

## [기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4. 1. 17.)<sup>21), 22)</sup>

- (경제활동) 2023년 연말 및 2024년 연초 경제는 지난 보고기간(2023. 5. 23.~8. 27.) 대비 큰 변화 없이 유지
  - (소비 및 생산)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기대를 충족하고 일부지역에서는 기대를 초과하였으나 경제활동이 부진한 산업 부문이 존재
  - (금리) 높은 금리로 인해 자동차 판매 및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제약적이지만 금리 하락에 대해 시장의 전망은 낙관적
  - (경제전망) 긍정적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 존재

- (노동시장)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거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향후 노동시장 냉각 조짐(sign of a cooling labor market)이 관찰됨
- (물가) 많은 지역에서 근소(slight)하거나 완만(modest) 내지 보통(moderate) 수준의 물가 상승을 보고
  - (상승 영향) 재산 및 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의 여파 지속
  - (기업 반응)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업 전망은 지역별로 혼조하나 하방 징후 존재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3년 4분기 및 연간 GDP(속보) 발표(2024. 1. 25.)<sup>23)</sup>

- (4분기) 2023년 4분기의 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3.3%(연율 기준)로 성장세를 보이거나 전 분기 수치(4.9%) 대비 낮은 수준에 이룸
- 4분기 경제 성장은 개인소비, 수출, 정부 지출(연방·주·지방), 고정투자(주거용·비주거용), 민간 재고 투자의 증가에 기인하였고 GDP 계상 시 차감 항목인 수입 또한 증가
- (연간) 2023년 연간 실질 성장률은 2.5%로 2022년(1.9%) 대비 증가

19) Reuters, "US Congress passes bill to avert government shutdown, sends it to Biden," 2024. 1. 19., <https://www.reuters.com/world/us/us-congress-scrambles-pass-stopgap-bill-avert-government-shutdown-2024-01-18/>, 검색일자: 2024. 1. 26.

20)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8일

21)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3. 11. 17.~2024. 1. 7. 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에 기반,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및 기업, 지역사회,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지를 받아 정보를 수집

22)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4. 1. 17.,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files/BeigeBook\\_20240117.pdf](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files/BeigeBook_20240117.pdf), 검색일자: 2024. 1. 18.

23) 미국 경제분석국(BEA),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Year 2023(Advanced Estimate)," 2024. 1. 25.,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01/gdp4q23-adv.pdf>, 검색일자: 2024. 1. 26.



일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안을 변경

- (세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6% 감소한 112조 5,717억 엔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예산<sup>26)</sup>보다 5천억 엔 증액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sup>24)</sup> 예산안 변경 및 국

회 세출(2024. 1. 16., 2024. 1. 26.)<sup>25)</sup>

- 재무성은 2024년에 발생한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 복구·부흥에 대해 지속적이고 빠른

- 일반 예비비 항목이 기존 5천억엔에서 1조엔으로 증액됨에 따라 일반세출이 기존 67조 2,794억엔에서 67조 7,764억엔

<표 6> 일본의 2024회계연도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구분		2023회계연도 당초 (A) <sup>1)</sup>	2024회계연도 정부안 (2023. 12. 22. 발표)	2024회계연도 정부안 (2024. 1. 16. 변경) (B)	증감액 (B-A)	증감율
세출	일반세출 <sup>2)</sup>	727,317	672,764	677,764	-49,554	-6.8
	사회보장관계비	368,687	377,193	377,193	8,506	2.3
	사회보장관계비 외 <sup>3), 4)</sup>	308,630	285,571	290,571	-18,060	-5.9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 <sup>5)</sup>	50,000	10,000	10,000	-40,000	-80.0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3,992	177,863	177,863	13,871	8.5
	국채비	252,503	270,090	270,090	17,587	7.0
합계	1,143,812	1,120,717	1,125,717	-18,095	-1.6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694,400	696,080	696,080	1,680	0.2
	기타 수입	93,182	75,147	75,147	-18,035	-19.4
	공채금	356,230	349,490	354,490	-1,740	-0.5
	건설공채	65,580	65,790	65,790	210	0.3
	특례공채	290,650	283,700	288,700	-1,950	-0.7
	합계	1,143,812	1,120,717	1,125,717	-18,095	-1.6

주: 1) 2023회계연도 예산은 2024회계연도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계산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2023회계연도 예산에는 방위력강화자금 편입 3만 3,806억엔을 포함

4)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일반 예비비는 2024년 발생한 노토반도(能登半島) 지진 복구·부흥에 대해 지속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 5천억엔을 증액한 1조엔을 편성

5)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는 '원유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의 약칭으로, 2023년도의 금액은 '신종 코로나 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의 합계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 16., p. 1 표를 참고하여 작성

24) 일본의 2024회계연도는 2024. 4. 1.~2025. 3. 31.

25)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の変更について」, 2024. 1. 16.,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eifuan2024/31.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eifuan2024/31.pdf), 검색일자: 2024. 1. 16., \_\_\_\_\_, 「令和6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 16.,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eifuan2024/27.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eifuan2024/27.pdf), 검색일자: 2024. 1. 26.

26) 2023년 12월 22일 발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12월호 재정동향」, p. 29~31을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75>, 검색일자: 2024. 1. 29.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8% 감소)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교부세·교부금과 국채비는 기존과 동일

- (세입)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6% 감소한 112조 5,717억 엔으로, 공채금이 기존 34조 9,490억엔에서 35조 4,490억엔으로 변경(전년 당초 예산 대비 0.5% 감소)
  - 특례국채<sup>27)</sup> 발행액이 5천억엔 증액되었으며, 조세 및 인지수입과 기타수입은 기존과 동일
- (국채) 2024회계연도 국채의존도<sup>28)</sup>는 기존보다 0.3%p 증가한 31.5%로 변경(전년 당초 예산 대비 0.4%p 증가)
- 재무성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조 8,095억엔 감소(-1.6%)한 112조 5,717조엔 규모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기타]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 (2024. 1. 22.)<sup>29)</sup>
  - (시나리오별 가정) 본 전망은 2024년도까지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의 실적치와

정부 경제전망<sup>30)</sup>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2025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전망을 제시

- (경제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2025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0.8%, 명목 GDP 성장률은 1.7%로 전망되며,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2025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3%, 명목 GDP 성장률은 2.8%로 전망
  - 중장기적으로 기준선 시나리오의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 성장률은 약 2%, 명목 GDP 성장률은 약 3%를 나타낼 전망
- (재정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도 -0.4%, 2026년도에는 0%로 개선된 이후 완만하게 악화될 전망이며,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악화의 영향으로 2027년도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도 -0.2%, 2026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된 후 전망 기간 내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

27) 일반회계에서 발행되는 국채에는 건설국채, 특례국채가 있으며, 건설국채는 재정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고 특례국채는 건설국채를 발행해도 세입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공공사업비 등 이외의 세출에 충당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함(출처: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jgbs/summary/kokusai.html>, 검색일자: 2024. 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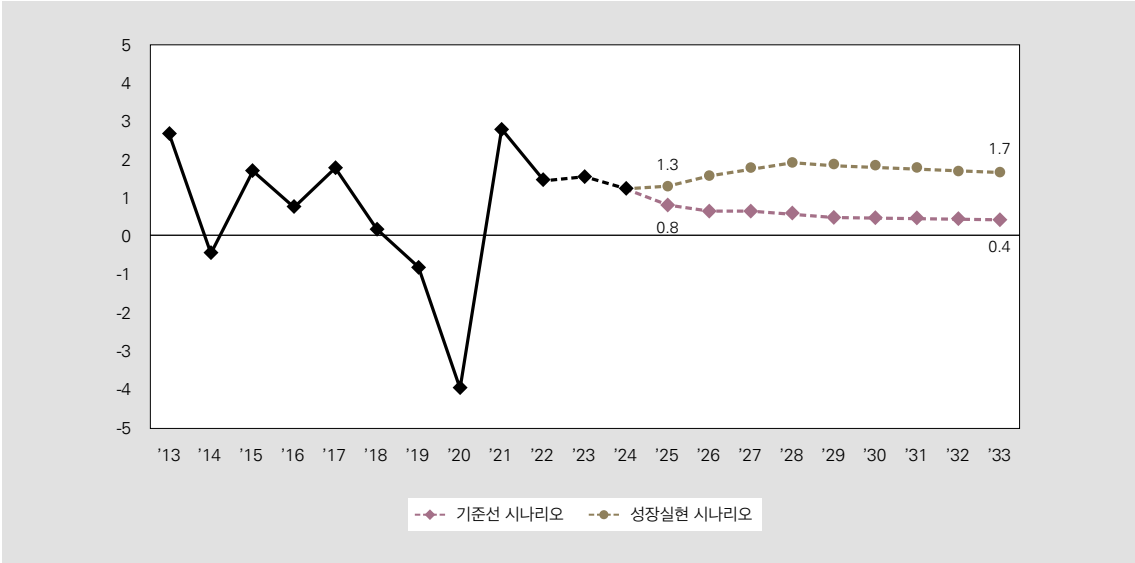
28) 국채의존도는 국채발행액을 일반회계 세출총액으로 나누어서 산출

29)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1月22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1. 22., <https://www5.cao.go.jp/keizai3/econome/r6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4. 1. 25.

30) 일본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23. 12. 21.,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2023/r051221mitoshi.pdf>, 검색일자: 2024. 1. 25.

[그림 1] 일본의 중장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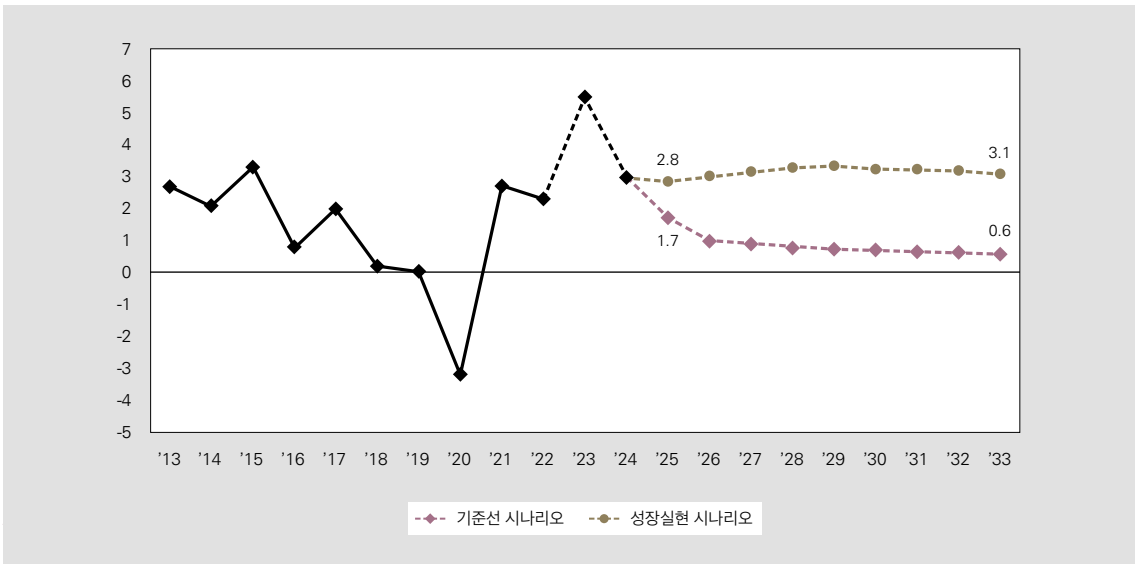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1月22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1. 22., p. 3, 그림 3.

[그림 2] 일본의 중장기 명목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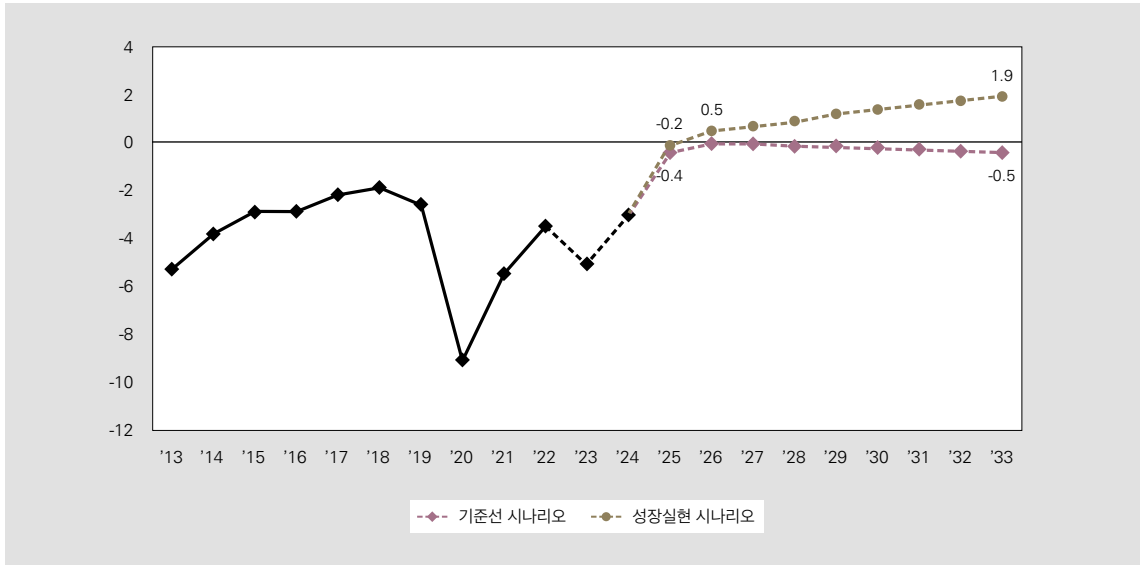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1月22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1. 22., p. 3, 그림 4.

[그림 3] 일본의 국가 및 지방의 중장기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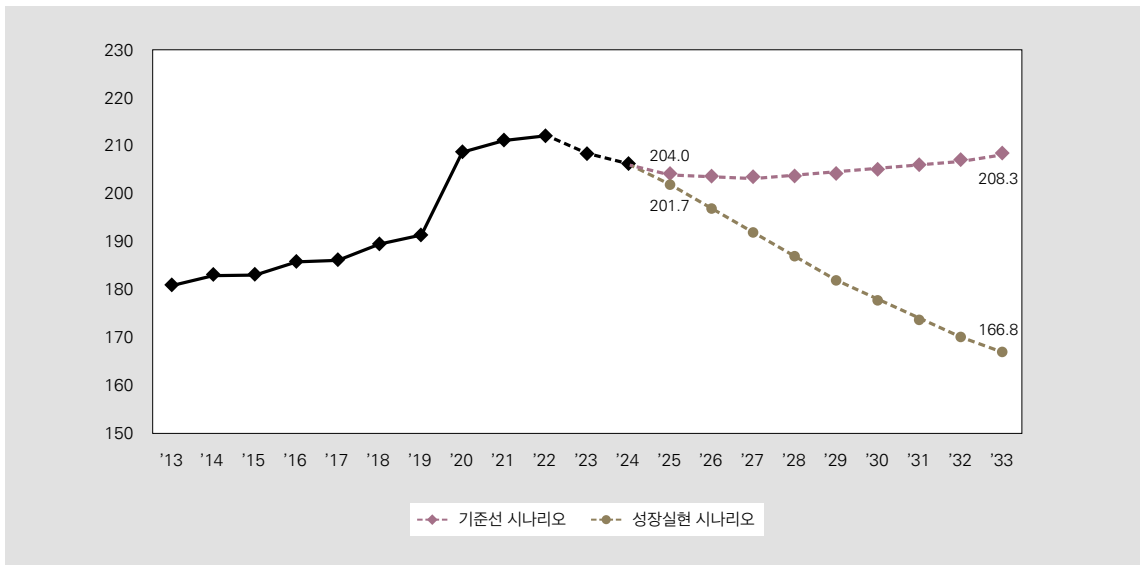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1月22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1. 22., p. 8, 그림 8.

[그림 4] 일본의 국가 및 지방의 중장기 채무잔고 전망(GDP 대비)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1月22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1. 22., p. 9, 그림 10.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하락할 전망

■ 일본 내각부, 노토반도 지진 재해자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발표(2024. 1. 25.)<sup>31)</sup>

- (기본방침) 재해자들의 생활 및 생업의 재건, 복구·부흥을 위한 대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을 정리한 「재해자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를 발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잔액(약 4,600억엔)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1조엔)을 재원으로 활용
- (긴급 대응 정책) 생활 재건, 생업 재건, 재해복구 등 세 가지 방면으로 긴급 대응 정책을 시행
  - (생활 재건) 대피소에서의 생활환경 개선, 호텔·여관 등 2차 피난처 확보, 도로, 수도 학교시설 등의 복구 및 주거 확보, 이재민 지원, 금융지원·세제상 대응 등
  - (생업 재건) 중소·소규모 사업자 지원, 농림수산업자 지원, 관광 부흥을 위한 지원, 고용 유지 대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 재생 도모
  - (재해 복구) 국가의 권한 대행 등을 통해 공공 토목 시설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추진
- (예비비 사용) 이번 패키지와 관련하여 재무성에서는 1,553억엔의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을 발표<sup>32)</sup>
  - 일본 재무성은 생활 재건 관련 정책에 694억

<표 7> 일본 노토반도 지진 재해자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관련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

(단위: 억엔)

구분		금액
생활 재건	2차 피난처, 주거 확보 등	438
	재해 폐기물 처리	202
	자위대 활동 등	54
	계	694
생업 재건	중소·소규모 사업자 지원	205
	농림수산업자 지원	75
	관광 부흥을 위한 지원	104
	계	384
재해 복구	공공 토목시설, 공공시설 복구 등	404
	에너지 인프라(SS <sup>1)</sup> 등) 복구 <sup>2)</sup>	19
	의료·사회복지 시설 등 복구	52
	계	475
합계		1,553

주: 1) 주민거점 SS(Service Station)는 자가 발전 설비를 갖추어 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 시에도 지역 주민에게 급유할 수 있는 주유소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resources\\_and\\_fuel/distribution/juminkyotens/](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resources_and_fuel/distribution/juminkyotens/), 검색일자: 2024. 1. 29.)

2) 에너지 인프라(SS 등) 복구에는 에너지대책특별회계 예비비 19억 엔을 사용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能登半島地震に係る被災者の生活と生業支援のためのパッケージに基づく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1. 25. 표를 참고하여 작성

엔, 생업 재건 관련 정책에 384억엔, 재해 복구 관련 정책에 475억엔 등 총 1,553억엔의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을 발표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4. 1. 24.)<sup>33)</sup>

- (경제) 해외 경제 회복 둔화로 인한 하방압력

31) 일본 내각부, 「被災者の生活と生業(なりわい)支援のためのパッケージ」, 2024. 1. 25., [https://www.bousai.go.jp/pdf/240125\\_shien.pdf](https://www.bousai.go.jp/pdf/240125_shien.pdf), 검색일자: 2024. 1. 25.

32) 일본 재무성, 「令和6年能登半島地震に係る被災者の生活と生業支援のためのパッケージに基づく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1. 25.,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nt240126.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nt240126.pdf), 검색일자: 2024. 1. 26.

33) 일본은행, 「経済物価情勢の展望(2024年1月)」, 2024. 1. 24.,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401b.pdf>, 검색일자: 2024. 1. 29.

이 있으나 보복소비 수요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며, 이후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의 영향이 완화될 것이나 정부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책 효과의 반작용이 상승 요인으

로 작용하여 2024회계연도에는 2.4%를 나타낼 전망

- 2025회계연도에는 상승폭이 축소되어 1%대 후반을 나타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 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특히 물가에 대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강화되는지 여부에 주시할 필요

- (2023년 10월 전망과 비교) 2024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원유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하향 조정

<표 8> 2023~2025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3회계연도	1.6~1.9 <1.8>	2.8~2.9 <2.8>
2023년 10월 전망	1.8~2.0 <2.0>	2.7~3.0 <2.8>
2024회계연도	1.0~1.2 <1.2>	2.2~2.5 <2.4>
2023년 10월 전망	0.9~1.4 <1.0>	2.7~3.1 <2.8>
2025회계연도	1.0~1.2 <1.0>	1.6~1.9 <1.8>
2023년 10월 전망	0.8~1.2 <1.0>	1.6~2.0 <1.7>

-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선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 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4.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출처: 일본은행, 「經濟·物價情勢の展望」(2024年 1月), 2024. 1. 24., p. 10 일부 발췌



독일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 내각, 2차 예산 자금 조달법안 승인 (2024. 1. 10.)<sup>34)</sup>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법 위헌 판결(2023. 11.)<sup>35)</sup>에 대한 대응으로 2차 예산 자금 조달법(Haushaltsfinanzierungsgesetz)안을 승인함<sup>36)</sup>

34) 독일 연방 정부, “Regierungspressekonferenz vom 10. Januar 2024,” 2024. 1. 1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regierungspressekonferenz-vom-10-januar-2024-2252404>, 검색일자: 2024. 1. 29.; 독일 연방 의회, “Koalition legt zweites Haushaltsfinanzierungsgesetz vor,” 2024. 1. 9.,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985376>, 검색일자: 2024. 1. 29.  
 35)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법에서의 차입수권 사용은 기본법에서 규정한 단년도 예산원칙과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해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으며, 기후변화자금 약 600억유로 대한 재정계획 수정을 요구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를 참고  
 36) 예산 자금 조달법은 2024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입법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로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3년 8월호를 참고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동 법안은 2024년과 그 이후 연도에 대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주요정책 변경에 관한 내용
- 1차 예산 자금 조달법은 2023년 12월 중순 추경예산법 논의와 함께 연방의회에서 통과
- (주요 내용) 2차 예산 자금 조달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 변경은 아래와 같음
  - (항공세 인상) 항공세법에 규정된 세율 인상으로 2024년 4억 4,500만유로, 2025년 5억 8천만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2024년 5월부터 항공세 19% 인상으로 항공권 비용 증가(거리 1등급 €13.03 → 15.53, 거리 2등급 €33.01 → 39.34, 거리 3등급 €59.43 → 70.83)<sup>37)</sup>
  - (독일 사회법전 제2권) 구직자 기초보장의 연방보조금을 축소하고 중복 수혜방지 및 추가 교육이수 등을 통해 수혜자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연간 1억 7천만유로의 지출 감소
  - (독일 사회법전 제3권)<sup>38)</sup> 고용촉진 재정분담의 일환으로 연방고용청은 2024~2025년에는 각 15억유로, 2026~2027년에는 각 11억유로를 연방정부에 지급 예정
  - (독일 사회법전 제6권) 법정 연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보조금 축소로 연간 6억유로의 지출 감소
- 독일 연방재무부, FY2023 잠정결산 발표(2024. 1. 16.)<sup>39)</sup>
  - (수입) 신규차입을 제외한 연방정부 수입은 목표 대비 30억유로 높은 3,930억유로를 기록
    - FY2023 조세수입은 목표 대비 2억유로 낮은 3,561억유로를 기록하고, 세외수입은 목표 대비 32억유로 높은 369억유로를 기록
  - (지출) FY2023의 총지출은 목표 대비 35억유로 낮은 4,577억유로를 기록
  - (신규차입) FY2023의 신규차입은 계획보다 2억유로 더 적게 소요되어 272억유로를 기록(FY 2022 1,154억유로)
  - (자본지출) FY2023의 자본지출은 550억유로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0년(503억유로)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록
    - 자본지출은 계획 대비 62억유로 낮은 수준이나 전년도에 비해 19%(87억유로) 증가
  - (평가) FY2023 결산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재정적

37) 독일 연방 의회, "Entwurf eines Zweiten Haushaltsfinanzierungsgesetzes 2024; D. Haushaltsausgaben ohne Erfüllungsaufwand(Luftverkehrsteuergesetz)," 검색일자: 2024. 1. 31.

38) 연방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사이 노동시장 위기관리 및 대규모 실업을 막기위해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BA)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238억유로의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2027년 동안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부분적 보상 실시

39) 독일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Jahresabschluss des Bundeshaushalts 2023," 2024. 1.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1/2024-01-16-vorlaeufiger-jahresabschluss-bundeshaushalt-2023.html>, 검색일자: 2024. 1. 19.

**<표 9> 독일의 FY2023 잠정 결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2년	2023년 (목표) (A)	2023년 (잠정결산) (B)	차이 (B)-(A)
총지출	481.3	461.2	457.7	-3.5
총수입	481.3	461.2	457.7	-3.5
조세수입	337.2	356.3	356.1	-0.2
세외수입	28.7	33.7	36.9	3.2
신규차입	115.4	27.4	27.2	-0.2
비고: 투자	46.2	61.1	55.0	-6.2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Jahresabschluss des Bundeshaushalts 2023," 2024. 1. 16.

**자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

- 2024년 1월 연방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추가예산을 포함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험 예산의 적자는 2.0%(마스트리히트조약 기준)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
- 코로나19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감소하겠으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집행될 예정
  - 독일 연방군 및 NATO 등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조치 등이 포함

**[기타]**

- 독일 연방통계청, 2023년 독일 GDP 성장률(1차 추계) 발표(2024. 1. 15.)<sup>40)</sup>
  - (GDP) 독일의 2023년 GDP 성장률은 -0.3%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0.7% 성장한 수준

- 높은 물가로 인한 경제위축, 금리상승, 국내외 수요감소로 2023년 독일의 경제는 정체된 것으로 평가
- 서비스 부문이 전반적으로 독일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건설부문을 제외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량은 2.0% 감소
  - 정보통신 부문은 +2.6%로 가장 큰 성장률

**<표 10>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계 최종소비지출	-5.9	1.5	3.9	-0.8
정부 최종소비지출	4.1	3.1	1.6	-1.7
총고정자본형성	-2.4	-0.2	0.1	-0.3
건설	3.9	-2.6	-1.8	-2.1
기계장비	-11.1	2.8	4.0	3.0
기타	-4.0	2.1	-0.7	-0.6
수출	-9.3	9.7	3.3	-1.8
수입	-8.3	8.9	6.6	-3.0
총부가가치	-4.0	3.3	1.7	-0.1
제조업	-7.9	9.4	-0.3	-0.4
건설	2.5	-5.3	-3.3	0.2
도소매·교통·숙박·음식업	-7.1	1.2	3.3	-0.1
정보·통신	0.2	7.7	4.0	2.6
사업서비스	-5.1	4.6	2.6	0.3
공공서비스·교육·보건	-1.2	1.2	2.7	1.0
기타 서비스	-12.8	0.2	6.0	1.8
GDP	-3.8	3.2	1.8	-0.3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im Jahr 2023 um 0,3 % gesunken," 2024. 1. 15.

40)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im Jahr 2023 um 0,3 % gesunken," 2024. 1. 1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1/PD24\\_019\\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1/PD24_019_811.html), 검색일자: 2024. 1. 24.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을 기록하였으며, 공공 서비스 부문, 교육, 의료(+1.0%), 비즈니스 서비스(+0.3%)에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무역, 운송, 숙박업 등은 -1.0%로 약세를 띠

- 가계 및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0.8%, 7.7% 감소하였으며, 이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관련 지원 중단에 기인

• 건설의 총고정자본형성은 2.1% 하락하였으나, 기계·장비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3.0% 증가

• (노동시장) 2023년 취업자 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으로 인한 고용이 늘어 전년 대비 0.7% 증가한 4,590만명을 기록

• (일반정부 재정) 2023년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 규모는 2022년 대비 약 140억유로 감소한 827억유로를 기록

- 가스 및 전기 가격 상한제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정부 지원 조치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여 대규모 지출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관련 테스트 및 백신 구입 등의 지출이 줄어 재정적자 감소

**<표 11>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규모	-147,698	-129,741	-96,910	-82,705
GDP 대비 비율	-4.3	-3.6	-2.5	-2.0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im Jahr 2023 um 0.3 % gesunken," 2024. 1. 15.

■ 독일 연방통계청, 2023년 독일 잠정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2024. 1. 16.)<sup>41)</sup>

• (연간) 2023년 독일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5.9%(잠정)를 기록하고,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 기록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식품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

• 2023년 식품가격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거의 모든 식품군이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음

-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조치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완화되어 2023년 에너지 물가는 5.3% 증가

• 2023 가정용 에너지가격은 전년대비 14.0% 증가하였으며, 경유 -11.3%, 고급 휘발유, -4.0%, LPG +3.0% 등 연료비는 종류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표 12> 독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

연도	CPI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식료품	에너지 제외	에너지 (가계 에너지 및 연료)
2023년	5.9	5.1	12.4	6.0	5.3
2022년	6.9	3.8	13.4	4.9	29.7
2021년	3.1	2.3	3.2	2.3	10.4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Consumer price index - special breakdown,"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Prices/Consumer-Price-Index/Tables/Consumer-prices-special.html#242202>, 검색일자: 2024. 1. 22.

41) 독일 연방통계청, "Inflationsrate im Jahr 2023 bei +5,9 %," 2024. 1. 1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1/PD24\\_020\\_6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1/PD24_020_611.html), 검색일자: 2024. 1. 22.



## 프랑스

## [예산·결산 등]

-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4년 예산법(LOI n° 2023-1322 du 29 décembre 2023 de finances pour 2024)<sup>42)</sup>(2023. 12. 29.) 및 사회보장부  
문 예산법(LOI n° 2023-1250 du 26 décembre 2023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sup>43)</sup>(2023. 12. 28.) 최종 승인  
및 공포
  - 2023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  
산법안<sup>44)</sup>을 의회가 채택(2023. 12. 17.)<sup>45)</sup>하  
고, 프랑스 헌법위원회(Le Conseil constitu-  
tionnel)에서 2024년 예산법으로 제정(2023.  
12. 29.)
  - 2023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사회  
보장부문 예산법안을 의회가 채택(2023. 12.  
4.)<sup>46)</sup>하고,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2024년 사  
회보장부문 예산법으로 제정(2023. 12. 28.)

## [기타]

-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재정자문위원회(HCFIPS),  
사회보장부문 자금조달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24. 1. 16.)<sup>47)</sup>
  - 2023년 물가 상승과 대외 환경의 영향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2022년  
부터의 회복 흐름이 이어져 사회보장 부문 재  
정수지가 개선됨
  - 하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여전히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건강보험 부문은 2020~2021년 코로나19 관  
련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2022년에도  
높은 적자(-210억유로)를 기록
      - 2023년 건강보험 부문 재정적자는 94억유  
로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높  
은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노령보험기금 재정적자는 2023년 39억유로에  
서 2027년 136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42)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3-1322 du 29 décembre 2023 de finances pour 2024(1),” 2023. 12. 29.,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8727345>, 검색일자: 2024. 1. 25.

43)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3-1250 du 26 décembre 2023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1),” 2023. 12. 28.,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8668665?init=true&page=1&query=financement+de+la+s%C3%A9curit%C3%A9+sociale+pour+2024&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8668665?init=true&page=1&query=financement+de+la+s%C3%A9curit%C3%A9+sociale+pour+2024&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검색일자: 2024. 1. 25.

44) 프랑스의 2024년 예산법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하반기 재정동향』 및 『2024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참고

45) 프랑스 의회, “Adoption du PLF 2024(2nde partie et ensemble), en nouvelle lecture, après le rejet d’une motion de censure(49.3),” 2023. 12. 1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adoption-du-plf-2024-2nde-partie-et-ensemble-en-nouvelle-lecture-apres-le-rejet-d-une-motion-de-censure-49.3>, 검색일자: 2023. 12. 20.

46) 프랑스 의회, “Adop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lecture définitive), après le rejet d’une motion de censure(49.3),” 2023. 12. 4.,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adoption-du-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4-lecture-definitive-apres-le-rejet-d-une-motion-de-censure-49.3>, 검색일자: 2023. 12. 19.

47) 사회보장부문 재정자문위원회(Haut Conseil pour le financement de la protection sociale, HCFIPS), “Note sur le financement de la protection sociale en 2023,” 2024. 1. 16., <https://www.securite-sociale.fr/home/hcfips/zone-main-content/rapports-et-avis-du-hcfips/note-sur-le-financement-de-la-pr.html>, 검색일자: 2024. 1. 29.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2023년 1월 연금 개혁<sup>48)</sup>으로 인해 재정적자의 규모의 전망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2024년 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별한 비용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부문 지출 증가율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sup>49)</sup>는 2020~2023년 기간 5%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이후 2.9%로 낮아질 전망
-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프랑스의 채무 상황은 현재 경제 상황과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채무 관리 및 사회보장부문 지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영국

- 영국 재무부, 2024년 1월 6일부터 국민보험료 감면 적용(2024. 1. 6.)<sup>50)</sup>
  - 2024년 1월 6일부터 근로자의 국민보험료 기

- 본 요율<sup>51)</sup>이 기존 12%에서 10%로, 2%p 인하
- 이로 인해 연간 국민보험료는 15% 이상 감소하여 평균 연봉 3만 5,400파운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약 450파운드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
  - 정규직(full-time) 간호사는 520파운드, 일반 수련의(junior doctor)는 750파운드, 교사는 630파운드 절약 예상
- 영국 전역의 2,700만명의 근로자가 감면 혜택을 받고, 가구 기준으로 약 1,000파운드 상당의 국민보험료 경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자영업자의 국민보험료 기본 요율<sup>52)</sup>은 2024년 4월 6일부터 9%에서 8%로 1%p 인하
  - 200만명의 자영업자가 연간 350파운드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연평균 소득 2만 8,200파운드 기준)
-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sup>53)</sup>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함에 따라 이번 감면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부유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
- 영국 국가보험계리국, 연례보고서(Up-rating report 2024) 발표(2024. 1. 16.)<sup>54)</sup>

48) 프랑스의 2023년 연금개혁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상반기 재정동향』 참고

49) ONDAM(objectif national de dépenses d'assurance maladie)의 목표치를 바탕으로 병원예산(공공병원, 민간병원, 사회의료기관) 및 외래 진료 예산이 편성됨

50) HM Treasury, "£1,000 yearly tax cut for households from today," News story, 2024. 1. 6., <https://www.gov.uk/government/news/1000-yearly-tax-cut-for-households-from-today>, 검색일자: 2024. 1. 8.

51) 242~967파운드의 주급 또는 1,048~4,189파운드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출처: 정부 통합 홈페이지, <https://www.gov.uk/national-insurance/how-much-you-pay>, 검색일자: 2024. 1. 29.)

52) 연간소득 1만 2,570~5만 270파운드를 버는 자영업자에게 적용(출처: 정부 통합 홈페이지, <https://www.gov.uk/self-employed-national-insurance-rates>, 검색일자: 2024.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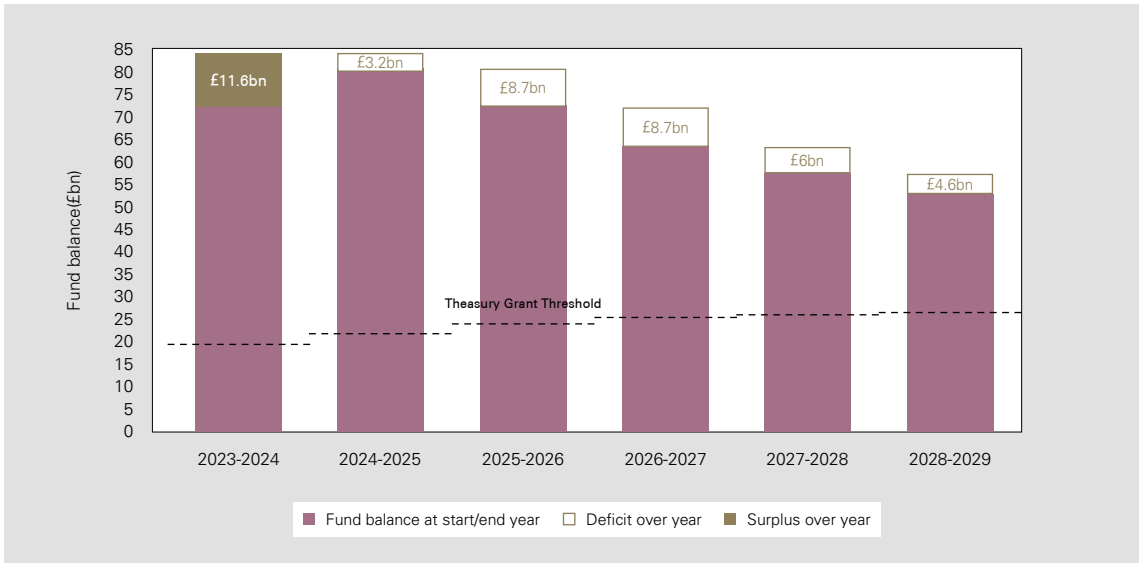
53) 2015년 100 기준, CPIH 연율은 2022년 10월에 9.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2월에 4.2%까지 하락

54)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Up-rating report 2024," News story, 2024. 1. 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up-rating-report-2024>, 검색일자: 2024. 1. 17.

- (개요) 영국의 국가보험계리국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국민보험기금에 대한 전망을 발표
  - 이번 보고서에는 2028-2029회계연도까지의 기금 전망과 함께 2024년 요율 변경에 따른 영향을 포함
- (주요 내용) 2024년 요율 변경으로 인해 기금수지는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기적으로 최소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단기 전망) 2023-2024회계연도 말 기금수지는 직전 회계연도 말 대비 130억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4년 요율 변경으로 인해 14억파운드가 감소된 116억 파운드 증가 전망
  - 2024-2025회계연도 말 기금수지는 직전 회계연도 말 대비 175억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요율 변경으로 인해 당초 대비 208억 파운드가 감소된 32억파운드 감소 전망
  - (중기 전망) 예측기간 동안 매년 급여지출이 기여소득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수지는 2024-2025회계연도부터 매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금수지는 예측기간 동안 재무부 보조금 ((Treasury Grant)<sup>55</sup>) 기준선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무부 보조금 지급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림 5] 영국의 국민보험기금 수지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출처: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Up-rating report 2024*, 2024, p. 9, Chart 1.3.

55) 영국의 국민보험은 1년의 1/6, 즉 2개월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보장법 1993」에 따라 연간 지출 예상 금액의 최대 16.7%까지 재무부 보조금(Treasury Grant)을 지원받을 수 있음

<표 13> 영국의 국민보험기금 전망 민감도 분석

(단위: 백만파운드)

가정	2023-2024회계연도 기여금 수입 증감	2024-2025회계연도 기여금 수입 증감	2025년 3월 말 기준 기금수지 증감
피고용자 소득증가율, 1%p 하락	-1,461	-3,070	-4,531
피고용자 소득증가율, 1%p 상승	1,454	3,097	4,551
피고용자 수, 20만명 감소	0	-860	-860
피고용자 수, 20만명 증가	0	860	860

출처: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Up-rating report 2024*, 2024, p. 19, Table 3.1.

- (민감도 분석) 기금수지는 단기적으로 소득증가율 및 고용 수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
  - 피고용자 소득증가율이 1%p 하락(상승)함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기금수지는 약 45억파운드 감소(증가)
  - 피고용자 수가 20만명 감소(증가)함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기금수지는 약 9억 파운드 감소(증가)



호주

[예산·결산 등]

■ 호주 재정부, 2023년 12월 재정보고서 발표 (2024. 1. 25.)<sup>56)</sup>

\* 공공 거버넌스,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제47조에 따라 재정 부 장관은 매월 재정상황을 발표

<표 14> 2023년 12월 재정상황

(단위: 십억호주달러)

구분	2023-24회계연도 12월 실적	2023-24회계연도 12월 누계 <sup>1)</sup>	2023-24회계연도 예산안 <sup>2)</sup> 전망	2023-24회계연도 중기 <sup>3)</sup> 전망
수취(Receipts) <sup>4)</sup>	58.4	325.3	668.1	685.3
지급(Payment) <sup>4)</sup>	61.4	336.5	682.1	686.4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sup>4)</sup>	-3.0	-11.2	-13.9	-1.1
재정수입(Revenue) <sup>5)</sup>	55.5	331.2	680.4	700.6
재정지출(Expenses) <sup>5)</sup>	60.3	333.7	684.1	689.3
재정수지(Fiscal balance) <sup>6)</sup>	-5.3	-3.8	-14.1	2.4
순자산(Net worth) <sup>7)</sup>	-	-559.2	-559.1	-479.8
순채무(Net debt) <sup>8)</sup>	-	530.9	574.9	491.0

주: 1) 2023년 7~12월 누계

2) FY2023-2024 예산안은 2023년 5월 발표

3) FY2023-2024 중기재정전망(MYEFO)은 2023년 12월 발표

4) 현금주의 기준. 예산수지=수취-지급

5) 발생주의 기준

6) 발생주의 기준.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7) 순자산=총자산-총부채

8) 채무(예금, 정부채권(시장가), 대출 및 기타 차입금)에서 자산(현금 및 예금, 선급금, 투자, 대출 및 출자 금액)을 차감

출처: 호주 재정부,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Monthly Financial Statements for December 2023," 2024. 1. 25. 재구성

56) 호주 재정부, Commonwealth Monthly Financial Statements, 2024. 1. 25., <https://www.finance.gov.au/publications/commonwealth-monthly-financial-statements>, 검색일자: 2024. 1. 25.

- 2023-2024회계연도<sup>57)</sup> 12월까지 누적 예산수지는 112억 호주달러 적자, 재정수지는 38억 호주달러 적자로 집계됨
- 2023-2024회계연도 12월 말 순자산은 -5,592억 호주달러, 순채무는 5,309억 호주달러를 기록



## 네덜란드

### ■ 네덜란드 17차 예산자문단, 「17차 예산 권고안 보고서」 발표(2023. 12. 11.)<sup>58), 59)</sup>

- (현황분석) 네덜란드 17차 예산자문단(De Studiegroep Begrotingsruimte, SBR)은 17차 예산권고안 보고서를 통해 과거 및 향후 재정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
  - 새로운 정부에서는 재정적자가 증가하며 국가재정은 악화될 것임
  - 장기적으로 정책 조정이 없다면 보건, 고령화, 기후에 관한 비용들로 인해 다른 지출을 삭감하거나 증세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정부에서는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 사회적 문제를 추가적인 지출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재정적자에 대해 명확한 조치가 없었음

- (정책제언) 예산자문단은 동 보고서에서 새로운 내각에게 재정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새로운 정부에서는 재정수지를 GDP 대비 약 -2% 수준으로,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의 약 -1.6% 수준으로 수정하는 경로조정(koerscorrectie)을 권고

● 2028년부터 재정적자가 EMU 수지 기준인 3%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인 2%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28년부터 170억유로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경로조정의 시점에 대해,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tight) 물가상승률이 높은 현 시점에서 경기가 나쁠 때를 대비해 재정의 완충력(buffers)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

- 예산체계와 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의 집행력 제고 필요

- 지출한도의 칸막이로 인해 행정적 비용은 증가하나, 지출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문별 지출한도(de deelplafonds)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 네덜란드 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2023년 가을 기준」 발표(2024. 1. 18.)<sup>60)</sup>

57) 2023-2024회계연도: 2023년 7월~2024년 6월

58) 네덜란드의 예산자문단은 하원 선거가 있기 전과 후에 새로운 내각에게 예산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정책 제언을 하는 그룹으로 1971년 설립되었다. 전통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단장을 역임하며 각 부처 및 중앙정책기획국(CPB)의 고위 공무원들 및 간부들로 구성된다. 예산자문단의 조언들은 각 정당들에 의해 다음 내각에서의 예산정책에 반영된다.

59) 네덜란드 예산자문단, "Bijsturen met het oog op de toekomst- 17e Studiegroep Begrotingsruimte," 2023. 12. 11., <https://www.rijksfinancien.nl/sites/default/files/rapporten/sbr/Rapport-17e-Studiegroep-Begrotingsruimte.pdf>, 검색일자: 2024. 1. 24.

60) 네덜란드 은행, "DNB Autumn Projections - December 2023," 2024. 1. 18., [https://www.dnb.nl/media/ma5jgwre/77777-dnb-ia\\_eov-december-2023\\_eng\\_web.pdf](https://www.dnb.nl/media/ma5jgwre/77777-dnb-ia_eov-december-2023_eng_web.pdf), 검색일자: 2024. 1. 24.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경제전망) 2023년 경제성장률이 주춤에 따라 과열된 경제는 진정되고, 2023년 경제성장이 저조함에 따라 2023년 물가상승률도 하락
  - 높은 정부지출에 힘입어 2024년부터 경제는 단계적으로 회복할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2023년) 0.1%, (2024년) 0.3%, (2025년) 1.0%
  - 경제활동의 감소와 에너지 가격의 급속한 하락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HICP 전망: (2023년) 4.1%, (2024년) 2.9%, (2025년) 2.0%
  - 노동시장의 타이트함(tight)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한동안 2%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비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물가상승률 하락시점은 늦추어질 것<sup>61)</sup>
  - 임금상승률 전망: (2023년) 5.9%, (2024년) 5.7%, (2025년) 3.7%
  -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향후 증가할 것이며, 2025년에는 GDP 대비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 (2023년) -0.9%, (2024년) -2.6%, (2025년) -2.9%
- (정책제언) 경제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확보가 필수적
  - 불리한 경제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재정규율의 중요성이 더욱 대

두됨

-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에너지 위기 또한 정부의 재정여력이 경제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고령화, 보건, 기후 관련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5년 GDP 대비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예산자문단(SBR)의 권고와 동일하게 새로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GDP 대비 2% 내로 제한할 것을 제언
- 정부는 지출을 제한하거나 비효율적인 세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완충력을 구비함에 따라 정부는 경기가 후퇴할 때 지출을 삭감하거나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는 더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스웨덴

■ 스웨덴 재무부, 과도한 부채에 대한 대책 패키지 발표(2024. 1. 25.)<sup>62)</sup>

-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부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계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 증가

61) 2023년 기준 네덜란드 실업률은 3.6%

62) 스웨덴 재무부, "Åtgärder för att motverka överskuldssättning," 2024. 1. 2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1/atgarder-for-att-motverka-overskuldssattning/>, 검색일자: 2024. 1. 26.

- 과도한 부채의 원인 중 하나는 무담보 대출의 증가로, 무담보 가계 대출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
- 이러한 대출은 이자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대출자가 상환 문제를 겪을 위험이 큼
- 정부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구성된 대책 패키지를 발표
  - 첫째, 재무부는 무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안서를 제출
    - 주택 또는 차량 등을 담보로 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는 2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2026년 1월 1일 완전히 폐지
  - 둘째, 모기지 한도를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청(Finansinspektionen)에 과제를 위임
  - 모기지 한도를 높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소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무담보 대출을 줄일 수 있음

# 재정포럼

2024년 2월호 통권 제332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4년 2월 16일 발행 / 통권 제33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온디자인 TEL: 042-255-6225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